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 지침(지자체용) 제10-3판 개정전후대비표

〈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관리팀〉

쪽	현행(10-2판)	10-3판 개정(안)	개정사유
	Ⅳ. 해외입국자 관리방안		
17	2. 일반적 관리방안 ▶ 구체적인 관리방안은 「**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검역대응 지침**」 참조 추가	2. 일반적 관리방안 ▶ 구체적인 관리방안은 「**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검역대응 지침**」 참조 ▶ 오미크론 변이 대응 강화조치로, 해외외국자는 예방접종력 관계없이 격리면제 불가(격리면제서 소지자 제외)	〈해외출입국관리팀〉 오미크론 관련 대응 조치 변경 *근거: 코로나19 검역대응 지침(제10-5판), 2021.12.22. 시행
19	2. 일반적 관리방안 라. 기타 강화된 방역관리 조치 ○**(고위험국가)** 변이바이러스 발생 등 위험도를 고려하여 국가별 임시생활시설 검사 및 임시생활시설 격리 등 관리 강화 ▶ 상세사항은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검역대응 지침」 참조	2. 일반적 관리방안 라. 기타 강화된 방역관리 조치 ○**(고위험국가)** 변이바이러스 발생 등 위험도를 고려하여 국가별 임시생활시설 검사 및 임시생활시설 격리 등 관리 강화 ▶ 상세사항은 질병관리청 누리집 내 공지사항 및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검역대응 지침」 참조	〈해외출입국관리팀〉 추가 안내
20	3. 예방접종완료자 관리 방안 신설	3. 예방접종완료자 관리 방안 ▶ 오미크론 변이 대응 강화조치로, 해외외국자는 예방접종력 관계없이 격리면제 불가	〈해외출입국관리팀〉 오미크론 관련 대응 조치 변경 *근거: 코로나19 검역대응 지침(제10-5판), 2021.12.22. 시행
20	3. 예방접종완료자 관리 방안 가. 증상별 대응 절차 ○ 검역단계 무증상자	3. 예방접종완료자 관리 방안 가. 증상별 대응 절차 ○ 검역단계 무증상자	〈해외출입국관리팀〉 오미크론 관련 대응 조치 변경 *근거: 코로나19 검역대응 지침(제10-5

쪽	현행(10-2판)	10-3판 개정(안)	개정사유
	신설 ▶ **항만으로 들어오는 입국자 검사** : 하선 전에 검역소에서 PCR검사 실시, 입국 후 6~7일차 추가검사는 보건소에서 실시 ▶ **예방접종완료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해 격리면제 가능** : ①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완료자일 것(접종완료 후 2주 경과), ②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을 것, ③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發 입국자가 아닐 것 ▶ 입국 시 COOV(쿠브)앱 또는 국내 발급 예방접종증명서(확인서) 등으로 접종 이력 증빙 필수 ▶ **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는 주기적으로 별도 통지** : 공문 또는 질병관리청 누리집(www.kdca.go.kr 내 공지사항)	▶ **"2. 일반적 관리방안 → 가. 증상별 대응 절차 → 검역단계 무증상자"** 절차와 동일 삭제	판), 2021.12.22. 시행
20	3. 예방접종완료자 관리 방안 나. 기관별 역할 1) 질병관리청, 법무부 ○**(검역소)** ~ -**(접종이력 확인)** ~ -**(출발국가 확인)**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해당 여부 확인	3. 예방접종완료자 관리 방안 나. 기관별 역할 1) 질병관리청, 법무부 ○**(검역소)** ~ -**(접종이력 확인)** ~ ~~-**(출발국가 확인)**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해당 여부 확인~~	〈해외출입국관리팀〉 오미크론 관련 대응 조치 변경 *근거: 코로나19 검역대응 지침(제10-5판), 2021.12.22. 시행

쪽	현행(10-2판)	10-3판 개정(안)	개정사유
	-**(식별표시)** 상기 조건 충족시 입국자 여권에 '접종완료자' 스티커 부착 ○**(특별입국부스)**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설치 확인 ○**(출입국심사대)** 여권에 '접종완료자' 스티커가 부착된 입국자에 대해 격리통지서 미발급 및 관련 시스템에 '예방접종완료자'임을 등록 ▶ **공항 입국자의 경우, 특별입국절차 간소화 운영 중** - 적용대상 : 공항 입국 격리제외자 ▶ 국내 예방접종완료자, 체류자격이 A1(외교), A2(공무), 격리면제서 소지자 - 입국시 자가격리앱 설치, 전화수신 확인, 검역확인증 발급 적용 제외 ▶ 체류자격이 A1 · A2 이거나 격리면제서를 소지한 대상의 경우, 임시생활시설 또는 관할보건소에서 입국 후 1일차 PCR검사를 받고 자가진단앱은 설치함 ▶ 입국시 접종 이력을 증빙하여 격리면제가 가능한 예방접종완료자는 자가격리앱 · 자가진단앱 모두 미설치	-**(식별표시)** ~~상기 조건 충족시~~ 입국자 여권에 '접종완료자' 스티커 부착 ~~○**(특별입국부스)**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설치 확인~~ ○**(출입국심사대)** 여권에 '접종완료자' 스티커가 부착된 입국자에 대해 격리통지서 ~~미~~발급 및 관련 시스템에 '예방접종완료자'임을 등록 ▶ **공항 입국자의 경우, 특별입국절차 간소화 운영 중** - 적용대상 : 공항 입국 격리제외자 ▶ 국내·외 예방접종완료자, 체류자격이 A1(외교), A2(공무), 격리면제서 소지자 - 입국시 자가격리앱 설치, 전화수신 확인, 검역확인증 발급 적용 제외 ▶ 체류자격이 A1 · A2 이거나 격리면제서를 소지한 대상의 경우, 임시생활시설 ~~또는 관할보건소~~에서 입국 후 1일차 PCR검사를 받고 자가진단앱은 설치함 ▶ 입국시 접종 이력을 증빙한 예방접종완료자는 입국 후 지자체에서 자가격리앱 설치 안내	
21	2) 보건소 ○**(입국자 확인)** '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'에서 입국자 정보 및 접종 이력 확인 ○**(PCR검사)**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입국 후 1일차 및 6~7일차 PCR검사 실시 ▶ **입국 후 1일차 또는 6~7일차 PCR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** : 자가격리 대상자로 전환하고, 격리통지서를 발급하여 입국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다음 날의 정오까지 자가격리 및 능동감시 실시 ○**(관리방법 안내)** '수동감시 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' 교부 참고자료 [부록27]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수동감시 중 생활수칙 안내문	2) 보건소 ○**(입국자 확인)** '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' 및 '외국인정보공동이용시스템'에서 입국자 정보 및 접종 이력 확인 ○**(PCR검사)**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입국 후 1일차 및 격리해제 전 PCR검사 실시 ▶ **입국 후 1일차 ~~또는 6~7일차~~ PCR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** : 자가격리 대상자로 전환하고, 격리통지서를 발급하여 입국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다음 날의 정오까지 자가격리 및 능동감시 실시 ○**(관리방법 안내)** '자가격리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' 교부 및 자가격리앱 설치 확인 참고자료 [부록3] 자가격리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	〈해외출입국관리팀〉 오미크론 관련 대응 조치 변경 *근거: 코로나19 검역대응 지침(제10-5판), 2021.12.22. 시행

<table>
<tr><th>쪽</th><th>현행(10-2판)</th><th>10-3판 개정(안)</th><th>개정사유</th></tr>
<tr><td>22</td><td>3. 예방접종완료자 관리 방안
라. 해외 접종이력 등록
○ 대응 절차
 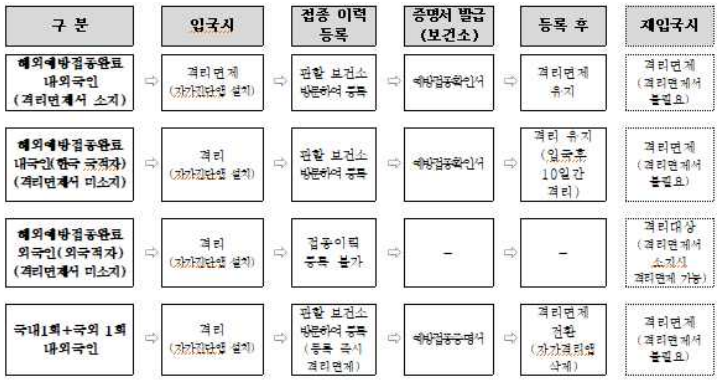

▶ 격리면제서 소지 해외 예방접종완료 내 · 외국인
: 입국 후 1일차, 6~7일차 PCR검사 실시, 등록 즉시 확진자 밀접접촉시, 사회적 거리두기 등 국내접종완료자와 동일한 방역원칙 적용
▶ 격리면제서 미소지 해외 예방접종완료 내국인
: 입국 후 1일차, 격리해제전 PCR검사 실시, 등록 즉시 확진자 밀접접촉시, 사회적 거리두기 등 국내접종완료자와 동일한 방역원칙 적용되나, 격리면제서가 없기 때문에 입국 후 10일간 격리는 하여야 함
▶ 국내1회+국외 1회 접종완료 내 · 외국인
: 입국 후 1일차, 6~7일차 PCR검사 실시, 국내 예방접종완료자와 동일하게 등록되기 때문에 등록 즉시 격리면제자로 전환 가능함</td><td>3. 예방접종완료자 관리 방안
라. 해외 접종이력 등록
○ 대응 절차(입국 당시 미등록된 경우)

▶ 격리면제서 소지 해외 예방접종완료 내 · 외국인
: 입국 후 1일차, 6~7일차 PCR검사 실시, 등록 즉시 확진자 밀접접촉시, 사회적 거리두기 등 국내접종완료자와 동일한 방역원칙 적용
▶ 격리면제서 미소지 해외 예방접종완료 내·외국인
: 입국 후 1일차, 격리해제전 PCR검사 실시, 등록 즉시 확진자 밀접접촉시, 사회적 거리두기 등 국내접종완료자와 동일한 방역원칙 적용되나, 격리면제서가 없기 때문에 입국 후 10일간 격리는 하여야 함
~~▶ 국내1회+국외 1회 접종완료 내 · 외국인
: 입국 후 1일차, 6~7일차 PCR검사 실시, 국내 예방접종완료자와 동일하게 등록되기 때문에 등록 즉시 격리면제자로 전환 가능함~~</td><td>〈해외출입국관리팀〉
오미크론 관련 대응 조치 변경
*근거: 코로나19 검역대응 지침(제10-5판), 2021.12.22. 시행</td></tr>
<tr><td>23</td><td>4. 격리면제서 소지자 관리방안
▶ 구체적인 관리방안은 중수본 「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&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업무 안내」 참조
가. 증상별 대응 절차
○ 검역단계 무증상자</td><td>4. 격리면제서 소지자 관리방안
▶ 구체적인 관리방안은 중수본 「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」 참조
가. 증상별 대응 절차
○ 검역단계 무증상자</td><td>〈해외출입국관리팀〉
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으로 통합됨
오미크론 관련 대응 조치 변경</td></tr>
</table>

쪽	현행(10-2판)	10-3판 개정(안)	개정사유
	 나. 기관별 역할 1) 질병관리청, 법무부 ○**(검역소)** 입국 검역 시 모든 입국자 대상으로 개인별 발열감시 및 건강상태질문서와 PCR음성확인서, 격리면제서 등을 제출받아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확인·분류 ○**(출입국심사대)** ~ ○**(임시생활시설)** 격리면제서 소지자 중 '미접종자'에 대해 진단검사 실시 ▶ 격리면제서 소지자 중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는 관할보건소에서 입국 후 1일차 검사 실시 ▶ 격리면제서 소지자 중 미접종자는 임시생활시설에서 입국 후 1일차 PCR검사 실시	 나. 기관별 역할 1) 질병관리청, 법무부 ○**(검역소)** 입국 검역 시 모든 입국자 대상으로 개인별 발열감시 및 건강상태질문서와 PCR음성확인서, 격리면제서 등을 제출받아 격리면제자 확인 ○**(출입국심사대)** ~ ○**(임시생활시설)** 격리면제서 소지자에 대해 입국 후 1일차 진단검사 실시 ~~▶ 격리면제서 소지자 중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는 관할보건소에서 입국 후 1일차 검사 실시~~ ~~▶ 격리면제서 소지자 중 미접종자는 임시생활시설에서 입국 후 1일차 PCR검사 실시~~	*근거: 코로나19 검역대응 지침(제10-5판), 2021.12.22. 시행
24	다. 격리면제자 관리방안	다. 격리면제자 관리방안	〈해외출입국관리팀〉 오미크론 관련 대응 조치 변경 *근거: 코로나19 검역대응 지침(제10-5판), 2021.12.22. 시행

쪽	현행(10-2판)	10-3판 개정(안)	개정사유
	◆ **격리 면제자** * (근거)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검역대응 지침」 ① 비자 타입이 A1(외교), A2(공무), A3(협정)의 경우 * 단, SOFA협정 적용자로 주한미군(A3)과 그 관련자는 미측 자체 격리 ② 입국 전 한국대사관(또는 관계부처)에서 다음의 용무로 '격리면제서' 사전 발급을 받은 경우 ▲ 중요한 사업상 목적(계약, 투자 등)* ▲ 학술 · 공익적(국제대회,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제한) ▲ 인도적 목적 등(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장례식 참여로 한정) ▲ 공무국외출장 후 귀국하는 공무원 (공무출장명령서와 '격리면제서' 소지 필수, 출장지에 대사관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출장명령서 소지로 대체) * 중요한 사업 목적으로 단기간 방문하는 장기체류비자(D7, D8, D9) 소지 외국인 포함(자가격리면제서 소지 필수) ③ 항공기 승무원의 경우 ④ 객실승무원 외 탑승정비사, 화물정비사(GD지참) 및 부정기편 운항에 필수적인 현지 지점 파견자(출장품의서, 항공사 ID카드 지참) ⑤ 국내외 예방접종완료자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▲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완료자인 경우 ▲ 무증상 ▲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적용 제외국가 發 입국자가 아닐 것 ▲ 입국시 COOV앱 또는 국내 발급 예방접종증명서(확인서)로 증빙 가능한 경우 ⑥ 입국자 중 해수부에서 제공한 격리면제자로 관할 검역소에서 '격리면제서' 발급을 받은 경우 ▲ 접안 전 14일 이상 선박에서만 체류하고, 승하선 및 선원교대 이력 없고, 유증상자 및 환자 발생 등이 없는 선박 내 선원 ▲ 단거리 노선(한-중)을 기항하는 국적 컨테이너 화물 및 카페리여객선(한중합작 선사 포함)의 내국인 선원 ▲ 국적선사의 국적선(컨테이너선, 벌크선, 탱커선, 자동차운반선)에 승선한 내국인 선원(방역강화대상국가 및 러시아 기항 또는 14일 이내 경유 선박은 미적용)	◆ **격리 면제자** * (근거)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검역대응 지침」 ① 비자 타입이 A1(외교), A2(공무), A3(협정)의 경우 * 단, SOFA협정 적용자로 주한미군(A3)과 그 관련자는 미측 자체 격리 ② 입국 전 한국대사관(또는 관계부처)에서 다음의 용무로 '격리면제서' 사전 발급을 받은 경우 ▲ 중요한 사업상 목적(계약, 투자 등)* ▲ 학술 · 공익적(국제대회,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제한) ▲ 인도적 목적 등(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장례식 참여로 한정) ▲ 공무국외출장 후 귀국하는 공무원 (공무출장명령서와 '격리면제서' 소지 필수, 출장지에 대사관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출장명령서 소지로 대체) * 중요한 사업 목적으로 단기간 방문하는 장기체류비자(D7, D8, D9) 소지 외국인 포함(자가격리면제서 소지 필수) ③ 항공기 승무원의 경우 ④ 객실승무원 외 탑승정비사, 화물정비사(GD지참) 및 부정기편 운항에 필수적인 현지 지점 파견자(출장품의서, 항공사 ID카드 지참) ⑤ 입국자 중 해수부에서 제공한 격리면제자로 관할 검역소에서 '격리면제서' 발급을 받은 경우 ▲ 접안 전 14일 이상 선박에서만 체류하고, 승하선 및 선원교대 이력 없고, 유증상자 및 환자 발생 등이 없는 선박 내 선원(방역강화대상국가 및 러시아 기항 또는 14일 이내 경유 선박은 미적용)	
26	5. 검역단계 확진자 관리방안	5. ----------	〈중수본 생활치료센터관리팀〉 생활치료센터 입소 의뢰 절차 현행화

쪽	현행(10-2판)	10-3판 개정(안)	개정사유
	신설 ▶ **「검역 단계 (내·외국인) 확진자 치료병상 배정 절차」**(중수본 환자병상관리반, '20.7.6.) 참조 가. 병상배정 요청 2) 경증 확진자의 경우(공항, 방대본 운영 임시생활시설) (생략) ▶ 장거리 이동이 요구되는 등 거주지 소재 병상 배정이 어려운 경우(예. 국립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제주도민), 거주지 소재 시도 환자관리반이 중수본 생활치료센터확충팀에 연락하여 중수본 지정 생활치료센터에 입소 요청 가능 ○ (국내에 거주지 불분명한 내국인) 검역소 및 방대본 운영 임시생활시설은 중수본 생활치료센터확충팀에 연락하여 중수본 지정 생활치료센터에 배정 ○ (외국인) 장기거주·단기체류 여부 및 거주지 위치 불문하고 중수본 생활치료센터확충팀에 연락하여 중수본 지정 생활치료센터에 배정	▶ 입원요인이 없고 재택치료가 가능한 경우에는,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재택치료 안내서」참조 ▶ **「검역 단계 (내·외국인) 확진자 치료병상 배정 절차」**(중수본 환자병상관리반, '20.7.6.) 참조 가. ---------- 2) ----------(----------) ▶ ---------- ---------- 환자관리반이 중수본 지정 생활치료센터 또는 검역소 소재 생활 치료센터에 입소 요청 가능 ○ (----------) ---------- 임시생활시설은 ---------- 배정 요청 ○ (----) ---------- 불문하고 ---------- 배정 요청	〈해외출입국관리팀〉 코로나19 재택치료 안내서 참고
27	3) 경증 확진자의 경우(항만, 해수부 운영 격리시설) ○ (국내에 거주지 있는 내국인) 검역소 및 해수부 운영 격리시설은 확진자 거주지 소재 시·도 연락담당관에게 연락하여 거주지 소재 시·도 환자관리반에서 병상(생활치료센터 포함) 배정하도록 요청 ▶ 거주지 소재 시·도 내 배정이 원칙이나 관내 시설이 부족한 경우, 거주지 소재 시·도 환자관리반이 중수본 생활치료센터확충팀에 연락하여 중수본 지정 생활치료센터에 입소 요청 가능 ○ (국내에 거주지 불분명한 내국인) 검역소 및 해수부 운영 격리시설은 검역소 및 해수부 운영 격리시설 소재 시·도 연락담당관에게 연락하여 검역소 및 해수부 운영 격리시설 소재 시·도	3) ---------- ○ (----------)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▶ ---------- ---------- 환자관리반이 ---------- ---------- ○ (----------)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	〈중수본 생활치료센터관리팀〉 생활치료센터 입소 의뢰 절차 현행화

쪽	현행(10-2판)	10-3판 개정(안)	개정사유
	환자관리반에서 병상(생활치료센터 포함) 배정하도록 요청 ▶ 검역소 및 해수부 운영 격리시설 소재 시·도 내 배정이 원칙이나 관내 시설이 부족한 경우, 거주지 소재 시·도 환자관리반이 중수본 생활치료센터확충팀에 연락하여 중수본 지정 생활치료센터에 입소 요청 가능 ○ (외국인) 검역소 및 해수부 운영 격리시설은 장기거주·단기체류 여부 및 거주지 위치 불문하고 검역소 및 해수부 운영 격리시설 소재지 시·도 연락담당관에게 연락하여 검역소 및 해수부 운영 격리시설 소재 시·도 환자관리반에서 병상(생활치료센터 포함) 배정하도록 요청 ▶ 검역소 및 해수부 운영 격리시설 소재 시·도 내 배정이 원칙이나 관내 시설이 부족한 경우, 거주지 소재 시·도 환자관리반이 중수본 생활치료센터확충팀에 연락하여 중수본 지정 생활치료센터에 입소 요청 가능	---------- ▶ ---------- 환자관리반이 ---------- ○ (----) ---------- ▶ ---------- 환자관리반이 ----------	
28	6. 진단검사 ○ 모든 입국자는 입국일로부터 12~13일째(격리해제 전) 검사 1회 실시	6. ------ ○ ---------- 6~7일째(격리해제 전) ----------	〈중수본 생활치료센터관리팀〉 진단검사일 현행화
28	6. 진단검사 ○ 모든 입국자는 입국 후 1일 이내 진단검사 실시 ~ ○ 모든 입국자는 입국일로부터 12~13일째(격리해제 전) 검사 1회 실시	6. 진단검사 ○ 모든 입국자는 입국 후 1일 이내 진단검사 실시 ~ ○ 모든 입국자는 격리해제 전 PCR검사 실시	〈해외출입국관리팀〉 격리기간 변경에 따라 수정 (14일->10일)
	Ⅴ. 확진환자 대응방안		
29	1. 확진환자 관리 가. 환자 초기 분류 ○ 초기 분류는 확진 후 신속하게 코로나19 환자의 입원요인을	1. ---------- 가. ---------- ○ ---------- 임상증상 및 위험요인을	〈중앙사고수습본부〉 확진환자 대응 관련 재택치료로 개정

쪽	현행(10-2판)	10-3판 개정(안)	개정사유
	파악해 치료 순위를 정하고, 한정된 병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병상을 배정하는 것을 말함 (신설) ○ 초기 분류는 기초역학조사서와 입원/생활치료센터 선별을 위한 추가 질문지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지자체 환자분류반이 아래의 흐름도에 따라 수행 (신설)	---------- 한정된 병상(생활치료센터 포함) ---------- -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함 ▶ 상세사항은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재택치료 안내서」참조 ○ ---------- 추가 질문지에 ---------- 시·도 환자관리반이 아래의 입원 고려 위험요인을 참고하여 분류 - 시·도 환자관리반은 입원 고려 위험요인이 약한 환자를 거점 생활치료센터에 배정 가능하며 시·도 환자관리반에서 배정 절차를 진행함	
29	▶ 다만 분류표에 따라 결정할 수 없는 예외적인 환자 혹은 상황이 있는 경우 자문 의료진을 구성하여 상의 하에 결정 참고자료 [부록 6] 병상배정 원칙 및 환자 선별 질문지	▶ 초기 분류 시 재택치료 어려운 환자 조건 ① 입원/입소 요인(위험 요인)이 있는 자(동거인 포함) ② 감염에 취약한 주거 환경(고시원, 쉐어하우스, 노숙인 등)에 있는 자 ③ 소아/장애/70세이상 등의 경우로서 돌봄이 필요하나 보호자와 공동격리가 불가능한 자 ④ 이외에 지자체장이 예외적으로 재택치료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 ▶ 입원 고려 위험요인에 해당하더라도 코로나19 무증상이거나 재택기준에 부합하는 경증이면서 환자가 재택치료를 희망할 경우, 위험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전제로 재택치료로 분류 가능 ▶ 임상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예외적인 환자 혹은 상황이 있는 경우 자문 의료진을 구성하여 상의 하에 결정 참고자료 [부록 6] 환자 초기 분류를 위한 선별 질문지	〈중앙사고수습본부〉 확진환자 대응 관련 재택치료 분류 어려운 환자 조건 안내 부록 6 내용 중 병상배정원칙 삭제에 따른 명칭 변경

쪽	현행(10-2판)	10-3판 개정(안)	개정사유
29	[분류 흐름도] 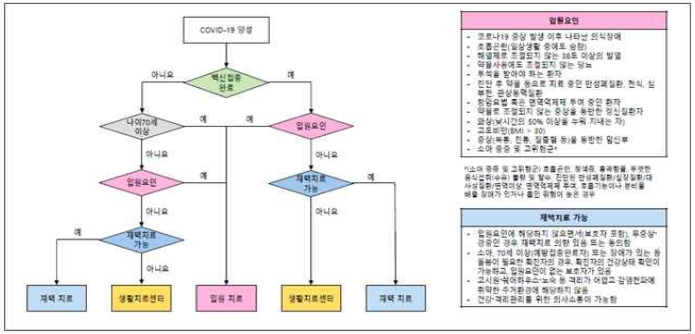 	(삭제)	〈중앙사고수습본부〉 분류 흐름도 삭제
30	(신설)	**[확진자의 의료기관 입원 고려 위험요인]** ▶ 시·도 환자관리반 의료진 판단에 따라 증상의 정도를 고려하여 거점 생활치료센터에 배정 가능 - 코로나19 증상 발생 이후 나타난 의식장애 - 호흡곤란(일상생활 중에도 숨참) - 해열제로 조절되지 않는 38도 이상의 발열 **3일 이상 지속** - 약물 사용에도 조절되지 않는 당뇨 - 투석을 받아야 하는 환자 (**단,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재택치료 가능**) - 진단 후 약물 등으로 치료 중인 만성폐질환, 천식, 심부전, 관상동맥질환 - 항암치료 혹은 면역억제제 투여 중인 환자 (**단,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재택치료 가능**) - 약물로 조절되지 않는 증상을 동반한 정신질환자 - 와상환자(낮시간의 50% 이상을 누워 지내는 자) (**단,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재택치료 가능**) - 증상(복통, 진통, 질출혈 등)을 동반한 임신부 - 소아 중증 및 고위험군▸ ▶ 호흡곤란, 청색증, 흉곽함몰, 투명한 음식섭취(수유) 불량 및 탈수, 진단된 만성폐질환/ 심장질환/ 대사성질환/면역이상, 면역억제제 투여, 호흡기능이나 분비물 배출 장애가 있거나 흡인 위험이 높은 경우 ▶ 재택 환자의 격리기간 모니터링은 상기 위험 요인을 고려하여 모니터링하고, 병상 배정이 필요한 경우 병상 배정 절차에 따름 **나. 생활치료센터 및 병상 배정 원칙** ○ 확진자 코로나19 증상의 중증도에 따라 아래와 같은 배정 원칙을 우선 적용함. 단, 중증 병상 가동 상황에 따라 중증 환자라도 치료 및 처치 요구도가 낮을 경우 감염병 전담 병원 등에 배정될 수 있음 - (무증상·경증) 거주요인 등에 따라 재택이 불가능할 경우 생활치료센터 배정 - (중등도) 감염병 전담병원 - (중증 이상) 중환자 치료가능 병상▸에 배정 ▶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, 중증환자 긴급치료병상,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(중환자용) 등	〈중앙사고수습본부〉 확진자의 의료기관 입원 고려 위험요인 안내 부록 6 중 생활치료센터 및 병상 배정 원칙 내용 정리

쪽	현행(10-2판)	10-3판 개정(안)	개정사유
31	(신설)	**[생활치료센터 입소 조건]** ▶ **(일반 생활치료센터)** 확진환자 중 입원 고려 위험요인이 없고 재택치료가 어려운 경우(아래 추가 입소 대상 포함) ▶ 일반 생활치료센터 추가 입소 대상 - 70세 이상 중 돌봄이 가능한 보호자가 없는 경우 - 재택치료 가능한 자 중 가구 내 암 환자, 예방접종미완료 영유아(12세미만) 등 감염취약자가 있어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희망하는 경우 - 노숙인, 쪽방·고시원 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인 경우(고혈압·당뇨 등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정신질환자, 알콜중독자 제외) ▶ 관할지역 생활치료센터에 우선 입소 ▶ 역학조사 또는 생활치료센터 입소 단계에서 정신질환자나 알콜중독자로 판단되면 즉시 입원 조치하되, 병원 병상이 즉시 배정되기 어려운 경우 관할 거점 생활치료센터로 우선 배정 ▶ **(거점 생활치료센터)** - 확진환자 중 강화된 의료 모니터링이 필요하거나, 입원 고려 위험요인이 있더라도 증상을 고려하여 거점생활치료센터에 입소가 가능하다고 시·도 환자관리반 의료진이 판단한 경우 - 입원환자 중 담당의사의 판단에 따라 생활치료센터 전원이 필요한 경우 - 재택치료 대상 중 시·도 환자관리반 및 보건소에서 단기간(1~3일)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(재택치료 중 응급상황 이외의 이상징후 등 발생) - 항암치료·면역억제제 투여 중인 환자(본인이 희망하는 경우) - (예외) 일반 생활치료센터 부족으로 배정받지 못해 대기중인 자(후순위) 등 **[생활치료센터 입소 제외(재택치료) 대상]** ▶ 약으로 증상이 조절되는 당뇨·고혈압환자(다만, 연령·주거환경 등 고려하여 생활치료센터 입소 요건을 갖춘 경우 생활치료센터 입소) ▶ 무증상·경증 확진자 중 시설입소자(노인, 장애인, 아동)는 시설에 충분한 재택치료 공간과 보호자(시설 종사자)가 있는 경우 해당 시설에서 재택치료 ○ 시도 환자관리반에서 병상 배정 환자로 분류하여 권역별 공동대응상황실로 의뢰되면 입원 판단 및 병상 배정을 위한 문진 등을 실시한 후 최종 분류 및 병상 배정 여부를 결정함 - 권역별 공동대응상황실에서 병상 가동 상황을 고려하여 재택 또는 생활치료센터 입소로 재분류한 경우는 이에 따라야 함 ▶ 코로나19 중앙/권역공동대응상황실 및 시·도 환자관리반의 배정결과를 따르도록 하고 이에 따라 입소한 환자의 응급상황 등에 대한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책임이 발생하지 않을 방침임을 안내 (2020.8.24. / 2020.12.22. / 2021.12.13.)	〈중앙사고수습본부〉 생활치료센터 입소 조건 및 입소 제외 대상(재택치료) 안내

<table>
<tr><th>쪽</th><th>현행(10-2판)</th><th>10-3판 개정(안)</th><th>개정사유</th></tr>
<tr><td>32</td><td>(신설)</td><td>〈코로나19 중증도 분류 기준〉
<table><tr><th>단계</th><th>정의</th><th>현행 중증도 분류</th></tr><tr><td>1</td><td>일상생활 지장 없음(no limit of activity)</td><td rowspan="2">경증이하</td></tr><tr><td>2</td><td>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으나 산소치료 불필요
(limit of activity but No O2)</td></tr><tr><td>3</td><td>비관산소치료(O2 with nasal prong)</td><td rowspan="2">중등증</td></tr><tr><td>4</td><td>산소마스크(O2 with facial mask)</td></tr><tr><td>5</td><td>비침습인공호흡기/고유량산소요법
(non-invasive ventilation/high flow O2)</td><td rowspan="3">위중증</td></tr><tr><td>6</td><td>침습인공호흡기(invasive ventilation)</td></tr><tr><td>7</td><td>다기관손상/에크모/CRRT
(multi-organ failure/ECMO/CRRT)</td></tr><tr><td>8</td><td>사망(death)</td><td>사망</td></tr></table>▶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입실기준 (대한중환자의학회)
○ 인공호흡기 이상의 치료가 필요①하거나 필요할 것으로 예상②되는 자, 기타 중환자실로 신속히 이송할 필요가 있는 자③
① 인공호흡기·에크모·CRRT 등의 치료를 요하는 환자 등
② (예) 고유량 산소요법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환자로서 곧 인공호흡기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자
③ (예) 폐렴이 확인되었고, 산소 요구량이 비관 분당 5L이상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으로 이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
○ 환자 상태, 환자 주치의의 의학적 판단, 병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
▶ 상세사항은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재택치료 안내서」 참조</td><td>〈중앙사고수습본부〉
부록 6 중 생활치료센터 및 병상 배정 원칙의 중증도 분류 기준 및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입실기준 내용 이동</td></tr>
<tr><td>33</td><td>나. 병원치료가 필요한 경우
1) 보건소
○ (중증도 확인) 확진환자의 의식수준, 체온 및 고위험군 등 지표를 바탕으로 중증도 확인
참고자료 [부록 6] 병상배정 원칙 및 환자 선별 질문지</td><td>다. ----------
1) -----
○ (---------) ----------

참고자료 [부록 6] 환자 초기 분류를 위한 선별 질문지</td><td>〈중앙사고수습본부〉
항목 추가에 따른 구조 변경 및 부록 6 명칭 변경</td></tr>
<tr><td>33</td><td>2) 시·도 환자관리반
○ (병상배정통보) 병상배정팀은 중증도 분류에 맞는 관할 지역 내 적정 병상 상황을 파악하여 병상을 배정하고 그 결과를 보건소로 통보</td><td>2) ----------
○ (--------) ----------

----------</td><td>〈중앙사고수습본부〉
부록 6 명칭 변경</td></tr>
</table>

쪽	현행(10-2판)	10-3판 개정(안)	개정사유
	참고자료 [부록 6] 병상배정 원칙 및 환자 선별 질문지 참고 〉 임상시험 참여 의향	참고자료 [부록 6] 환자 초기 분류를 위한 선별 질문지	
34	[입원환자 중 전원/전실이 필요한 경우] ▶ 의료기관 ○ (전원/전실요청) 치료를 담당한 병원은 진료과정 중 전원 또는 전실이 필요한 경우 환자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보고 후 병상 배정 받은 의료기관으로 전원 조치 또는 동일 의료기관 내 전실이 필요한 경우 (음압병상 ↔ 1인 병상 등)의 경우 담당 의사 판단에 따라 자체적으로 수행 (생략) ▶ 보건소 ○ (병상배정요청) 의료기관의 전원 요청을 받은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는 시·도 환자관리반으로 연락하여 가용 병상 배정을 요청하며 그 결과를 의료기관에 통보 ○ (환자이송) 병상 배정을 통보받은 보건소는 구급차 등 이송수단을 활용하여 해당 의료기관으로 이송 (이하 생략)	[----------] ▶ ------ ○ (---------)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(음압병상 ↔ 1인 병상) 등 ---------- ---------- ▶ ----- ○ (---------)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통보. 단, 증상 호전으로 인한 전원 시에는 의료기관 간 전원 협의가 있을 경우, 배정 요청 없이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전원 결과 통보 ○ (------) --- 배정 또는 전원 협의를 ---------- ----------	〈중수본 수도권긴급대응반〉 오탈자 수정 전원 협의 사항 관련 지자체 업무 원활화를 위한 사항 안내
35	[입원환자 중 의사의 판단에 따라 퇴원기준에 합당한 경우] (이하 생략) ▶ 생활치료센터(시설) ▶ 상세사항은 “Ⅴ. 확진환자 대응방안 → 1. 확진환자 관리 → 라. 입원요인이 없고 재택치료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 : 생활치료센터 입소” 참조	[----------] (이하 생략) ▶ 생활치료센터(시설) ▶ 상세사항은 “Ⅴ. 확진환자 대응방안 → 1. 확진환자 관리 → 라. 생활치료센터 입소 치료가 필요한 경우” 참조	〈중앙사고수습본부〉 라. 생활치료센터 입소 치료가 필요한 경우” 참조 수정

쪽	현행(10-2판)	10-3판 개정(안)	개정사유
36	다. 입원요인이 없고 재택치료가 가능한 경우 ▶ 상세사항은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재택치료 안내서」참조 라. 입원요인이 없고 재택치료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 : 생활치료센터 입소 ▶ 상세사항은 **「코로나19 대응 생활치료센터 운영 안내」** 참조 ▶ **시설입소 대상자** ▶ 상세사항은 **"Ⅴ. 확진환자 대응방안 → 1. 확진환자 관리 → 가. 환자 초기 분류"** 참조 - 입원환자 중 의사의 판단에 따라 퇴원기준에 합당한 경우 - 확진환자 중 입원요인이 없고 재택치료가 어려운 경우 ▶ (원칙)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상발생 후 7일까지는 생활치료센터 입소하고, 이후 3일은 자가격리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 ▶ 상세사항은 **"Ⅴ. 확진환자 대응방안 → 1. 확진환자 관리 → 라. 입원요인이 없고 재택치료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 : 생활치료센터 입소 → 3) 생활치료센터(시설)"** 항목 참고 - 증상발생 7일 후 퇴소하는 경우, 일시적인 격리해제시간은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장소로 이동하는 시간으로 제한되며, 이동수단은 일반 퇴소와 같은 방식으로 함. 지정된 격리장소에서 3일간 자가격리에 준하는 격리 실시(자가격리앱 설치) 후 PCR 검사없이 격리해제	(삭제) 라. 생활치료센터 입소 치료가 필요한 경우 ▶ 상세사항은 **「코로나19 대응 생활치료센터 운영 안내」** 참조 ▶ **시설입소 대상자** ▶ 상세사항은 **"Ⅴ. 확진환자 대응방안 → 1. 확진환자 관리 → 가. 환자 초기 분류"** 참조 (삭제) ▶ (원칙)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상발생 후 7일까지는 생활치료센터 입소하고, 이후 3일은 자가격리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 ▶ 상세사항은 **"Ⅴ. 확진환자 대응방안 → 1. 확진환자 관리 → 라. 생활치료센터 입소 차료가 필요한 경우 → 3) 생활치료센터(시설)"** 항목 참고 - 증상발생 7일 후 퇴소하는 경우, 일시적인 격리해제시간은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장소로 이동하는 시간으로 제한되며, 이동수단은 일반 퇴소와 같은 방식으로 함. 지정된 격리장소에서 3일간 자가격리에 준하는 격리 실시(자가격리앱 설치) 후 PCR 검사없이 격리해제	〈중앙사고수습본부〉 재택치료 가능한 사항 안내를 환자 초기 분류로 이동함에 따라 삭제 〈중앙사고수습본부〉 삭제 요청 〈중앙사고수습본부〉 수정 요청
36	라. 입원요인이 없고 재택치료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 : 생활치료센터 입소 1) 보건소 ○ (시설배정요청) 보건소는 시·도 환자관리반으로 연락하여 중증도 분류와 가용 시설배정 요청	라. 생활치료센터 입소 치료가 필요한 경우 1) ---- ○ (---------) ---------- ----------	〈중앙사고수습본부〉 라 항목을 간결한 문구로 수정 부록 6 명칭 변경

쪽	현행(10-2판)	10-3판 개정(안)	개정사유
	참고자료 [부록 6] 병상배정 원칙 및 환자 선별 질문지 〉 입원/생활치료센터/재택치료 선별을 위한 추가 질문지	참고자료 [부록 6] 환자 초기 분류를 위한 선별 질문지	
37	2) 시·도 환자관리반 ○ (시설배정 통보) 무증상·경증 환자로 분류되고 입원요인(고위험군)이 없으며 재택치료가 어려운 경우 병상배정팀은 생활치료센터를 파악하여 배정하고 그 결과를 환자 관할 보건소 및 배정 생활치료센터로 통보 참고자료 [부록 6] 병상배정 원칙 및 환자 선별 질문지 참고 〉 임상시험 참여 의향	2) ---------- ○ (----------) 시·도 환자관리반은 구 및 시·도 생활치료센터 또는 거점/일반 생활치료센터를 명확히 구분하여 배정 - (일반 생활치료센터) 무증상·경증 환자로 분류되고 입원 고려 위험요인이 없으며 재택치료가 어려운 경우 병상배정팀은 생활치료센터를 파악하여 배정하고 그 결과를 환자 관할 보건소 및 배정 생활치료센터로 통보 - (거점 생활치료센터) 확진환자 중 강화된 의료 모니터링이 필요하거나, 입원 고려 위험요인이 있더라도 증상을 고려하여 중증도분류팀(의사)의 판단에 따라 거점 생활치료센터에 배정한 경우 병상배정팀은 거점 생활치료센터를 파악하여 배정하고 그 결과를 환자 관할 보건소 및 배정 생활치료센터로 통보 참고자료 [부록 6] 환자 초기 분류를 위한 선별 질문지	〈중앙사고수습본부〉 일반 및 거점생활치료센터를 구분하여 관련 사항 안내 〈중앙사고수습본부〉 부록 6 명칭 변경

쪽	현행(10-2판)	10-3판 개정(안)	개정사유
38	(신설) ▶ 시·도 생활치료센터 입소실 부족 시 시·도 환자관리반은 타 시·도 생활치료센터에 직접 연락하여 입소실 협의 → 협의가 잘 안 될 경우,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시설 조정 요청 →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조정 후, 시·도 환자관리반에 결과통보 ▶ 확진환자의 배정결과는 환자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	▶ 역학조사 결과에 따른 생활치료센터 배정이 부적절한 경우, 시·도 환자관리반에서 조정하여 즉시 적절한 장소(병원/재택/일반/거점 생활치료센터)로 재배정 ▶ 관할지역 확진환자는 구 및 시·도 생활치료센터에 우선 배정하고, 관할지역 내 입소실이 부족하거나 수도권 등 권역별 공동대응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중수본 생활치료센터에 배정 (이하 생략)	〈중앙사고수습본부〉 생활치료센터 병상 재배정 등 관련 사항 추가
38	(신설)	[생활치료센터 환자 배정 및 관리 원칙] ▶ 중수본 및 시·도 생활치료센터 병상정보 공개 ▶ 병원전원 요청은 각 시·도 환자관리반으로 통일, 이송은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담당 유지 ▶ 시·도별, 권역별 거점 생활치료센터 병상 적정수 이상 반드시 설치	〈중앙사고수습본부〉 생활치료센터 환자 배정 및 관리 원칙 추가
40	3) 생활치료센터(시설) ○ (환자 기본유형: 7일 후 퇴소 및 자가격리) - (자가격리 부서 연계) 생활치료센터는 시군구 자가격리 전담부서에게 퇴소 및 자가격리 예상명단을 송부하고, 전담부서에서 자가격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등 이견이 없으면 확정	3) ---------(---) ○ (----------) - (----------) ----------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 및 시군구 자가격리 전담부서에 ----------	〈중앙사고수습본부〉 생활치료센터의 퇴소 및 자가격리 예상명단 송부 관련 추가 사항 안내
46	2. 확진환자 격리해제 가. 무증상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1) 임상경과 기반	2. ---------- 가. ---------- 1) ----------	〈환자관리팀〉 문구 수정(의미 동일 :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와 같음)

쪽	현행(10-2판)	10-3판 개정(안)	개정사유
	(생략) ○ (증상) 이 기간 동안 임상증상 미발생	○ (---) 상기 기간 동안 무증상 상태 지속	
46	나. 유증상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1) 임상경과 기반 (생략) ○ (증상) 최소 24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(신설)	나. ---------- 1) ---------- ○ (---) ---------- ▶ 임상증상 호전 기준(기저질환자) - 기저질환(증상)으로 코로나19 증상과 유사한 호흡기질환(증상)이 있는 경우 → 코로나19 감염 전과 비교하여 임상증상에 차이가 없는 경우, 호전으로 판단 가능	〈환자관리팀〉 기저질환자의 임상증상 호전 기준 명확화
46	2) 임상경과 기반(위중증▶ 단계에 해당하거나 해당한 적이 있는 경우) ○ (기간) 증상 발생 후 최소 10일 경과	2) ----------(----------) ○ (---) ---------- 경과, 최대 20일▶까지 적용(20일 경과 시 격리해제)	〈환자관리팀〉 (유증상 확진환자 중 위중증 환자) 격리해제 시 기간 기준 상한 제시(최대 20일까지) 및 증상 기준 상세화 및 명확화
47	(신설)	▶ (참고문헌) van Kampen, J.J.A., van de Vijver, D.A.M.C., Fraaij, P.L.A. et al. Duration and key determinants of infectious virus shedding in hospitalized patients with coronavirus disease-2019 (COVID-19). Nat Commun 12, 267 (2021)	〈환자관리팀〉 (유증상 확진환자 중 위중증 환자) 격리해제 시 기간 기준 상한 제시(최대 20일까지) 관련 참고문헌 안내 〈환자관리팀〉 기저질환자의 임상증상 호전 기준 명확화
47	(신설)	▶ 임상증상 호전 기준(기저질환자) - 기저질환(증상)으로 코로나19 증상과 유사한 호흡기질환(증상)이 있는 경우 → 코로나19 감염 전과 비교하여 임상증상에 차이가 없는 경우 또는 인공호흡기 등 생명연장 치료가 안정적일 때, 호전으로 판단 가능 ▶ 증상발생일로부터 20일 경과 시 증상 기준과 관계없이 격	

쪽	현행(10-2판)	10-3판 개정(안)	개정사유
		리해제함 ○ 단, 중증 면역저하자*의 경우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격리를 해제함 - 급성 또는 만성 백혈병 및 림프종에 의한 면역저하 상태 - HIV/AIDS에 의한 중증 면역저하 상태 - 최근 6개월 내 장기이식 관련 면역억제치료 받은 자 - 최근 3개월 내 기저질환으로 스테로이드 등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은 자 등 ※ (참고문헌) 영국 보건부 「Guidance for stepdown of infection control precautions and discharging COVID-19 patients('20.5.20)」의 '7. Severe immunosuppression definitions' ▶ 면역저하자의 범위는 상기 예시 사례에만 국한되지 않으며,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면역저하자로 판단한 경우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격리해제 시기를 결정	
47	3) 검사기반 ◆ 참고 (생략) ○ 임상경과 기반 기준 또는 검사기반 기준 중 먼저 격리해제를 할 수 있는 기준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적용함 (신설) (이하 생략)	3) ------ ◆ --- ○ ---------- ---------- ○ 임상경과 기반 기준은 환자의 타 질환 임상 경과를 고려하지 않고 적용함	〈환자관리팀〉 기저질환자의 임상증상 호전 기준 명확화
50			〈역학조사팀〉

<table>
<tr><th>쪽</th><th>현행(10-2판)</th><th>10-3판 개정(안)</th><th>개정사유</th></tr>
<tr><td></td><td>[역학조사 관련 용어]
<table><tr><th>용어</th><th>정의</th></tr><tr><td>감시</td><td>감염병 발생과 관련된 자료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집, 분석 및 해석하고 그 결과를 제때에 필요한 사람에게 배포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사용하도록 하는 일체의 과정</td></tr><tr><td>역학조사</td><td>감염병환자 등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감염병환자 등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하는 등의 활동과 감염병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한 경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그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하는 활동</td></tr><tr><td>잠복기</td><td>바이러스 등 병원체에 노출되어 증상 발현까지 걸리는 시간</td></tr><tr><td>전파가능기간</td><td>환자가 바이러스 등 병원체를 배출하여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는 기간</td></tr><tr><td>세대기</td><td>환자로부터 새로운 환자가 발생할 때까지의 기간</td></tr><tr><td>유행곡선</td><td>시간에 따른 발생 상황을 그래프로 시각화한 그림</td></tr><tr><td>전향적 접촉자 조사</td><td>환자의 접촉자를 찾아내고 감시·격리하여 감염 사슬을 차단하는 활동</td></tr><tr><td>후향적 접촉자 조사</td><td>환자의 잠복기를 고려하여 공동노출자를 찾아내고 감시·격리하여 감염 사슬을 차단하는 활동</td></tr><tr><td>지표환자</td><td>집단감염 사례에서 가장 먼저 인지된 확진자(확진일이 가장 빠른 환자)</td></tr><tr><td>선행확진자</td><td>환자의 감염원으로 추정되는 확진자(확진일이 앞선 환자)</td></tr><tr><td>근원환자</td><td>집단감염의 원인(감염원)으로 추정되는 확진자(증상발생일이 가장 빠른 환자)</td></tr></table></td><td>[역학조사 관련 용어]
<table><tr><th>용어</th><th>정의</th></tr><tr><td>감시</td><td>감염병 발생과 관련된 자료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집, 분석 및 해석하고 그 결과를 제때에 필요한 사람에게 배포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사용하도록 하는 일체의 과정</td></tr><tr><td>역학조사</td><td>감염병환자 등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감염병환자 등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하는 등의 활동과 감염병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한 경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그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하는 활동</td></tr><tr><td>잠복기</td><td>바이러스 등 병원체에 노출되어 증상 발현까지 걸리는 시간</td></tr><tr><td>전파가능기간</td><td>환자가 바이러스 등 병원체를 배출하여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는 기간</td></tr><tr><td>세대기</td><td>환자로부터 새로운 환자가 발생할 때까지의 기간</td></tr><tr><td>유행곡선</td><td>시간에 따른 발생 상황을 그래프로 시각화한 그림</td></tr><tr><td>전향적 접촉자 조사</td><td>환자의 접촉자를 찾아내고 감시·격리하여 감염 사슬을 차단하는 활동</td></tr><tr><td>후향적 접촉자 조사</td><td>환자의 잠복기를 고려하여 공동노출자를 찾아내고 감시·격리하여 감염 사슬을 차단하는 활동</td></tr><tr><td>지표환자</td><td>집단감염 사례에서 가장 먼저 인지된 확진자(확진일이 가장 빠른 환자)</td></tr><tr><td>선행확진자</td><td>환자의 감염원으로 추정되는 확진자(확진일이 앞선 환자)</td></tr><tr><td>근원환자</td><td>집단감염의 원인(감염원)으로 추정되는 확진자(증상발생일이 가장 빠른 환자)</td></tr><tr><td>능동감시</td><td>관할 보건소에서 1:1 담당자를 지정하여 감시 기간 동안 접촉자(또는 해외입국자)의 증상 발생 유무를 일일 2회 확인·관리하는 조치</td></tr><tr><td>수동감시</td><td>감시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하면서 접촉자(또는 해외입국자)가 발열, 호흡기증상 등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가까운 또는 관할보건소에서 검사를 받도록 하는 조치</td></tr></table></td><td>수동감시/능동감시 용어 정의 추가</td></tr>
<tr><td>55</td><td>3-1. 접촉자 조사 및 관리
가. 접촉자 조사
(신설)</td><td>3-1. ----------
가. ---------
▶ 오미크론 변이 관련 역학조사 및 접촉자 관리방안 (근거: 중앙방역대책본부-26782, '21.12.2)
- (관리방식) ① 밀접접촉자는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격리, ② 모든 접촉자 마지막 노출일로부터 총 3회 진단검사(인지시, 9일차)로 개별 및 지역집단사례 감시망 강화, ③ 모든 접촉자(일상접촉자 포함)는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(접촉자관리)에 등록 및 관리
▶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의 접촉자는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10일 격리 및 감시</td><td>〈역학조사팀〉
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역학조사 관련 사항 안내</td></tr>
<tr><td>55</td><td>나. 명단작성·등록 및 자가격리 통보</td><td>나. ----------</td><td>〈격리관리팀〉</td></tr>
</table>

쪽	현행(10-2판)	10-3판 개정(안)	개정사유
	○ 최초 인지 보건소 또는 검역소는 … (중략) ○ 최초 인지 보건소가 시스템에 접촉자 명단을 등록(검역소가 확인한 확진자 접촉자는 확진자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등록)하고,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관리 이관 및 자가격리 유선 통보	○ ---------- ○ 최초 인지 보건소가 시스템에 접촉자 명단을 등록하고,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관리 이관 및 자가격리 유선 통보 - 단, 검역소 및 정부 지정 임시생활시설에서 확인된 확진자의 접촉자는 확진자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시스템 등록하고, 접촉자의 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관리 이관 ※ 접촉자에 대한 격리통보는 이관받은 보건소가 수행	○ 임시생활시설 확진자 관련 업무처리 절차 회의 결과반영('21.12.15.) - 임시시설에서 발생한 확진자의 기내 접촉자는 검역소에서 실시하고, 접촉자 등록은 확진자 실거주지 보건소에서 실시
57	다. 관리사항 3) 예방접종완료자 관리 ○ 정의 - "예방접종완료자"▶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예방접종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함 ▶ 예방접종완료자 ① **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**의 2차 접종 후 2주가 경과▶된 경우 ② **1회 접종하는 백신**의 접종 후 2주가 경과▶된 경우 ▶ (예시) 예방접종완료일: 11.1일, 2주째: 11.15일, 지침 적용일: 11.16일 0시부터 - 국내 발급 예방접종증명서로 접종력이 확인되는 경우▶를 말함	다. ------ 3) ---------- ○ 용어정의 - "예방접종자"▶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▶ 예방접종자 구분 ① **1차 접종자** : 1차 접종을 한 자 ② **1차 접종완료자** : 1차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 ③ **2차 접종자** : 2차 접종을 한 자 ④ **2차 접종완료자** : 2차 접종 후 14일 경과한 날부터 6개월(180일) 이하인 자 ▶ 2차 접종 유효기간은 접종 후 6개월(180일) ⑤ **3차 접종자** : 3차 접종을 한 자 ⑥ **3차 접종완료자** : 3차 접종을 한 후 14일이 경과한 자 ▶ 단, 접종증명의 효력은 3차 접종 후 즉시 인정됨 ▶ (2차 접종완료자 예시) 5.1일 2차 접종을 받은 경우, 5.16일(14일 경과) 0시부터 10.28일(180일 경과) 24시까지 ▶ (6개월 경과 계산) 1개월을 30일로 단순 계산 - "예방접종완료자"▶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▶ 예방접종완료자 ① **2차 접종완료자(안센의 경우 1차 접종완료자)** : 2차 접종 후 14일 경과한 날부터 6개월(180일) 이하인 자 ▶ 180일 경과 후 3차 미접종자는 예방접종완료자에서 제외 ② **3차 접종완료자(안센의 경우 2차 접종완료자)** : 3차 접종을 한 후 14일이 경과한 자 - ---------- 경우는 다음과 같음	〈역학조사팀〉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유효기간 설정('22.1.3.부터 적용 예정)에 따른 예방접종완료자 관리 사항 변경 문구 수정

<table>
<tr><th>쪽</th><th>현행(10-2판)</th><th>10-3판 개정(안)</th><th>개정사유</th></tr>
<tr><td>58</td><td>▶ 수동감시를 위한 3가지 기본조건
① 밀접접촉 당시에 이미 예방접종완료자였을 것(예방접종완료 후 2주 경과된 자)
②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을 것
③ 확진자가 발생한 고위험 집단시설▶의 입소자, 이용자, 종사자가 아닐 것
(신설)</td><td>▶ ----------
① ---------- 예방접종완료자일 것
② ----------
③ ----------▶----------

▶ 단, 3차 접종완료자는 ①, ② 조건에 해당하면 수동감시 가능
<table><tr><th>구분</th><th>확진자가 발생한 고위험시설 입소자, 이용자, 종사자</th><th>동료/지인 등 기타</th></tr><tr><td>2차 접종완료자</td><td>수동감시 대상 아닌 자가격리</td><td>수동감시 대상</td></tr><tr><td>3차 접종완료자</td><td>수동감시 대상</td><td>수동감시 대상</td></tr></table></td><td>〈역학조사팀〉
국내 예방접종완료자 유효기간 설정(12.20부터 적용 예정)에 따른 예방접종완료자 관리 사항 변경</td></tr>
<tr><td>59</td><td>〈확진자 밀접접촉 관련 업무 처리 개요〉
 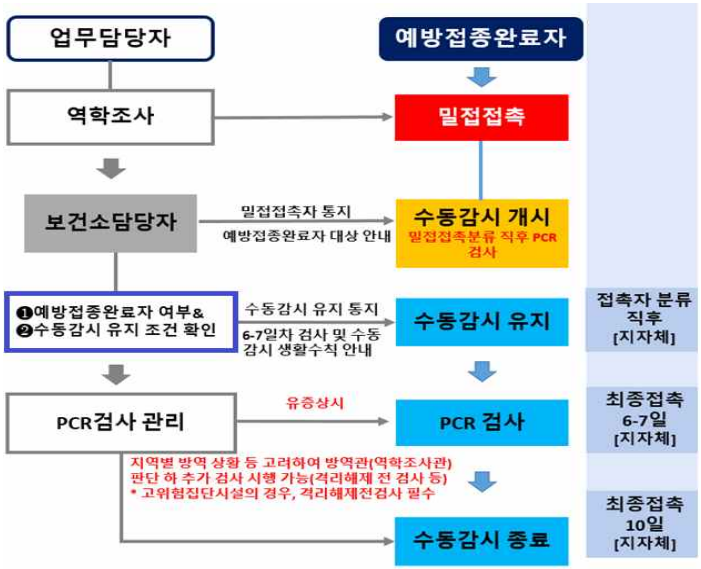
</td><td>〈----------〉
 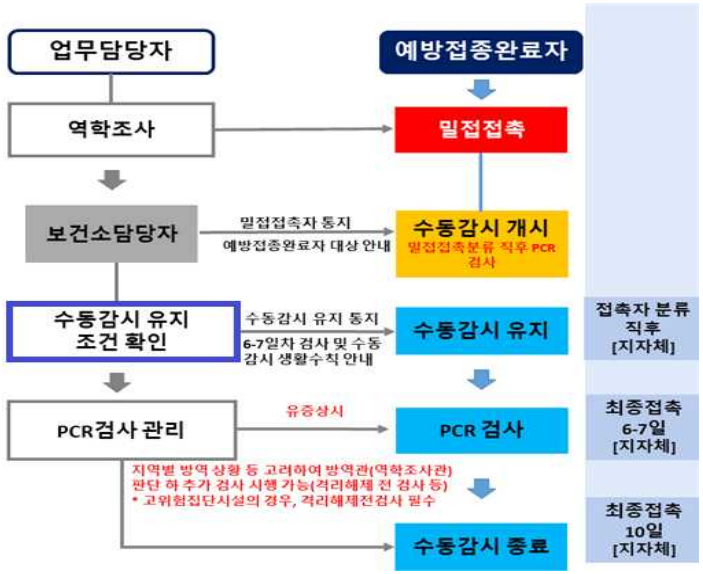
</td><td>〈역학조사팀〉
예방접종완료자 여부 확인이 수동감시 유지조건 확인에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수정</td></tr>
</table>

쪽	현행(10-2판)	10-3판 개정(안)	개정사유
74	라. 자가격리해제 ○ (안내)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는 격리대상자가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발생하지 않으면 확진환자 최종접촉일/입국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다음 날의 정오(12:00)에 격리해제됨을 안내 ▶ (예시) 최종접촉일/입국일(4.1일)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다음 날 4.11일 정오(12:00) 격리해제 ▶ 단, 시설에서 격리한 경우 시설의 상황에 따라 격리해제 시각 변동 가능 ○ (모니터링 해제) 모니터링 해제 통보 및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접촉자 모니터링 종료 조치 ○ (격리해제 전 검사)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더라도 모든 자가격리자는 최종접촉일 또는 입국일로부터 9~10일차 되는 날에 PCR 검사를 받아 음성임을 확인 ▶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도 격리해제 적용	라. 자가격리 기간 및 격리해제 ○ (--) 삭제 〈이동〉 ○ **(격리기간)** 자가격리 기간은 감염병환자등과 마지막으로 접촉한 날 또는 해외에서 입국한 날부터 1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정오(12:00)까지를 원칙으로 하되, 자가격리 통지서에서 명시한 기간으로 함 **관련서식** [서식 3] 입원·격리 통지서 / [서식 4] 격리통지서 수령증 ▶ (--) ---------- ▶ ---------- 〈신설〉 ※ 변이바이러스 등 출현시 역학적 위험도 평가 등에 따라 격리기간 및 격리해제 요건을 잠정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음 〈이동 후 삭제〉 ○ (----------) ---------- ▶ ---------- 〈수정〉	〈격리관리팀〉 변이바이러스 발생에 따른 격리기간 및 해제요건 탄력운영 명문화 격리기간 규정 지침 내 위치 변경

쪽	현행(10-2판)	10-3판 개정(안)	개정사유
	○ 격리해제 전 검사에서 미결정에 대한 판정이 연속 2회 이상 반복될 경우, 지자체에서 검사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격리해제 여부 결정 ▶ 미결정 상태에서 격리해제 결정 시 후속 모니터링 및 일정 기간 경과 후 재검사 권고 ○ (격리해제) 9~10일차 PCR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최종접촉일 또는 입국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정오(12:00)에 격리해제	- 격리해제 ---------- ▶ ---------- ○ (------) ----------	
75	▶ 음성 확인이 되지 않은 경우는 10일이 경과되더라도 격리해제할 수 없음 ▶ 9~10일차 검사를 늦게 받은 경우▶는 검사 결과 음성이 확인된 시점에 격리해제 ▶ (예시) 10일차 18시 검사하여 11일차 16시에 음성 확인 → 11일차 16시에 격리해제 ▶ 검사 미실시자 또는 거부자는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 정오(12:00)에 격리해제 ▶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도 격리해제 적용	▶ ---------- ▶ ---------- ▶ (---) ---------- ▶ ---------- ▶ ---------- 〈이동〉 ○ (모니터링 해제) 모니터링 해제 통보 및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접촉자 모니터링 종료 조치	
80	3-5. 역학조사 정보관리 나. 역학조사 관련 정보 종류 및 관리주체 ○ (심층역학조사서) 신고 후 48시간 이내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첨부 (신설)	3-5. ---------- 나. ---------- ○ (----------) ----------	〈역학조사팀〉 지자체 방역상황에 맞게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문구 추가

쪽	현행(10-2판)	10-3판 개정(안)	개정사유
		▶ 심층역학조사서는 지자체 방역상황 및 방역역량에 따라 변경하여 활용 가능	
85	5. 변이바이러스 환자관리 [변이바이러스 주요 대응 요약] 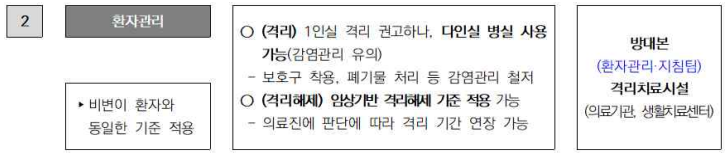	5. ---------- [----------] 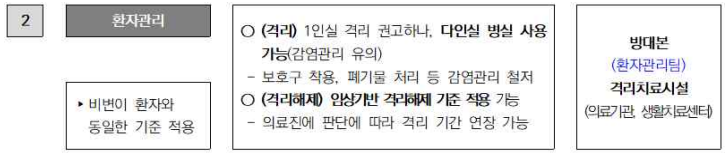	〈지침관리팀〉 환자관리·지침팀 → 환자관리팀, 지침관리팀 분류에 따름
Ⅵ.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 대응방안			
90	1. 개요 라. 입원치료 3) 치료장소 ○ 감염병환자등의 중증도 등에 따라 치료 장소를 정하며, 병원치료(감염병 관리기관 또는 감염병 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) 또는 시설치료▶로 구분 ▶ 「감염병예방법」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확진환자를 격리하여 건강관리 등을 지원하는 요양소 등 시설은 '생활치료센터'로 명명함(이하 "생활치료센터") 참고자료 [부록 6] 병상배정 원칙 및 환자 선별 질문지 참조	1. --- 라. ------ 3) ------ ○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▶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참고자료 [부록 6] 환자 초기 분류를 위한 선별 질문지	〈중앙사고수습본부〉 부록 6 명칭 변경
95	3. 조사대상 유증상자 대응방안 가. 선별진료소 이용절차 4) 상황별 대응 절차 ○ (검체 채취 및 이송) 검체 채취 및 전용 용기에 보관	3. ---------- 가. ---------- 4) ---------- ○ (----------) ----------	〈진단총괄팀〉 필수 검체를 명확히 제시 〈지침관리팀〉 코로나19 전파경로 및 국제기구 및 주요국 권고 근거, 국내 전문가 의견

<table>
<tr><th>쪽</th><th>현행(10-2판)</th><th>10-3판 개정(안)</th><th>개정사유</th></tr>
<tr><td></td><td>▶ 검체 채취 방법 등
- 상기도검체 1개 (비인두와 구인두 도말), 가래가 있는 경우 하기도검체 1개 추가
- 검체 채취자는 개인보호구(보건용 마스크(KF94 동급 이상), 일회용 방수성 긴팔 가운 또는 전신보호복, 일회용 장갑,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등) 착용</td><td>▶ ----------
- 상기도검체(필수), 기침이나 가래가 있는 경우 필요시 하기도검체 채취
- ----------
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, ----------
----------</td><td>및 현장요청 반영
일회용 방수성 긴팔 가운 사용 안내</td></tr>
<tr><td colspan="4">Ⅷ. 실험실 검사 관리</td></tr>
<tr><td>101</td><td>1. 검체 채취
나. 검체종류 및 포장
1) 검체종류
(생략)
<table>
<tr><th>번호</th><th colspan="2">검체 종류</th><th>용기 및 용량</th><th>비고</th></tr>
<tr><td>1</td><td>상기도</td><td>▸ 비인두도말물
▸ 구인두도말물</td><td>▸ 바이러스 수송배지(VTM)에 채취</td><td>▸ 분리된 독립공간에서 채취
▸ (신설)</td></tr>
<tr><td>2</td><td>하기도</td><td>▸ 가래</td><td>▸ (용기)
: 멸균 50㎖ 튜브
▸ (검체량)
: 3㎖ 이상</td><td>▸ 가래가 있는 환자에서 채취
▸ 가래 유도 금지(에어로졸 발생 가능성 있음)
▸ 정확한 진단을 위해 가래 채취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음압실에서 채취 (음압 시설이 없는 경우, 에어로졸 발</td></tr>
</table></td><td>1. -------
나. ----------
1) ----------
(생략)
<table>
<tr><th>번호</th><th colspan="2">검체 종류</th><th>용기 및 용량</th><th>비고</th></tr>
<tr><td>1</td><td>---</td><td>▸ 비인두도말물
▸ (삭제)</td><td>▸ --------

-------</td><td>▸ ----------

▸ 비인두도말물 채취가 어려운 경우* 구인두도말물로 대체</td></tr>
<tr><td>2</td><td>---</td><td>▸ --</td><td>▸ ------
▸ ------</td><td>▸ ----------
▸ ----------

▸ ----------

----------</td></tr>
</table></td><td>〈진단총괄팀〉
상기도 검체 채취 방법을 명확히 기술
〈지침관리팀〉
코로나19 전파경로 및 국제기구 및 주요국 권고 근거, 국내 전문가 의견 및 현장요청 반영
일회용 방수성 긴팔 가운 사용 안내</td></tr>
</table>

쪽	현행(10-2판)	10-3판 개정(안)	개정사유
	생 가능성이 있으므로, 외부 환기가 잘 되는 독립된 공간에서 채취) * (필수 검체) 상기도, (선택 검체) 하기도 ○ **(상기도 검체)** 상기도 검체는 비인두도말물 또는 구인두도말물을 채취하여 바이러스용 수송배지에 담아 검체시험의뢰서(서식 18)와 함께 수송 ▶ 비인두도말물을 우선적으로 채취하되, 영아 등 비인두도말물 채취가 어려운 경우 구인두도말물 채취 ▶ **비인두도말물(Nasopharyngeal swab)** : 콧구멍을 지나 입천장과 평행한 각도로 면봉을 밀어넣고 하비갑개 중하부에서 분비물을 긁어서 채취, 하비갑개 중하부에서 몇 초간 분비물을 흡수할 수 있는 시간을 두도록 하여 채취 ▶ **구인두도말물(Oropharyngeal swab)** : 혀를 누르고 인두후벽에서 분비물을 긁어서 채취	* **(비인두도말물 채취가 어려운 경우)** - 해부학적 또는 의학적인 이유로 비인두까지 면봉 삽입이 어려운 경우 - 의사소통이 불가하여 비인두도말 채취를 위한 협조가 어려운 경우 -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, 비인두도말물 채취가 불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※ 단순 통증·불편감은 해당하지 않음 ○ (-------) 면봉을 이용하여 상기도검체를 채취하고, 검체를 채취한 면봉을 ---------- ▶ (삭제) ▶ (----------) : ---------- ▶ (----------) : 뺨 안쪽, 혀 뿌리 등이 아닌, 혀를 누르고 편도 주변 인두후벽에서 분비물을 긁어서 채취하되, 분비물을 충분히 흡수하여 채취	
103	다. 주의 사항 ○ 검체 채취 시, KF94 또는 동급 이상의 호흡기보호구, 일회용 장갑, 일회용 긴팔가운 또는 전신보호복,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(필요시 불투과성 일회용 앞치마 추가 착용) 등의 개인보호구를 필수적으로 착용 및 검체 채취 후 소독 필수	다. ------- ○ ----------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, ----------	

<table>
<tr><th>쪽</th><th>현행(10-2판)</th><th>10-3판 개정(안)</th><th>개정사유</th></tr>
<tr><td colspan="4">Ⅹ. 자원관리</td></tr>
<tr><td>114</td><td>3. 이송
○ 이송요원은 적절한 개인보호구▶ 착용
▶ 1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또는 전신보호복, KF94 동급 이상의 호흡기보호구, 일회용 장갑, 고글(또는 안면보호구)</td><td>3. ---
○ ----------▶ ---
▶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, ----------
----------</td><td>〈지침관리팀〉
코로나19 전파경로 및 국제기구 및 주요국 권고 근거, 국내 전문가 의견 및 현장요청 반영
일회용 방수성 긴팔 가운 사용 안내</td></tr>
<tr><td colspan="4">Ⅺ. 질병개요</td></tr>
<tr><td>117</td><td>2. 발생 현황
가. 국외
○ '21.11.14. 각 국가지역 등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7,307,892,664건 실시
○ '21.11.17. 각 국가지역 등에서 환자 254,256,432명 발생, 5,112,461명 사망</td><td>2. ----------
가. ----
○ '21.12.19. ---------- 8,387,658,165건 실시
○ '21.12.20. ---------- 273,900,334명 발생, 5,351,812명 사망</td><td>〈지침관리팀〉
현황 현행화</td></tr>
<tr><td>117</td><td>출처: WHO Dashboard('21.11.18.)
<table><tr><th>구분</th><th>7일 내 신규 발생현황</th><th>누적 발생현황</th><th>7일 내 신규 사망현황</th><th>누적 사망현황</th></tr><tr><td>미주</td><td>803,781</td><td>95,396,419</td><td>11,418</td><td>2,324,139</td></tr><tr><td>유럽</td><td>2,247,912</td><td>81,894,394</td><td>28,879</td><td>1,493,570</td></tr><tr><td>동남아시아</td><td>143,414</td><td>44,327,019</td><td>3,049</td><td>700,830</td></tr><tr><td>지중해 동부</td><td>96,171</td><td>16,606,067</td><td>1,978</td><td>306,272</td></tr><tr><td>아프리카</td><td>11,497</td><td>6,190,015</td><td>479</td><td>151,881</td></tr><tr><td>서태평양</td><td>173,337</td><td>9,841,754</td><td>2,642</td><td>135,756</td></tr></table></td><td>출처: WHO Dashboard('21.12.20.)
<table><tr><th>구분</th><th>7일 내 신규 발생현황</th><th>누적 발생현황</th><th>7일 내 신규 사망현황</th><th>누적 사망현황</th></tr><tr><td>미주</td><td>997,063</td><td>99,775,067</td><td>11,933</td><td>2,386,978</td></tr><tr><td>유럽</td><td>2,601,597</td><td>94,637,598</td><td>26,311</td><td>1,628,961</td></tr><tr><td>동남아시아</td><td>83,568</td><td>44,833,250</td><td>2,377</td><td>716,955</td></tr><tr><td>지중해 동부</td><td>78,961</td><td>17,026,968</td><td>1,343</td><td>313,866</td></tr><tr><td>아프리카</td><td>238,151</td><td>6,802,970</td><td>548</td><td>154,356</td></tr><tr><td>서태평양</td><td>211,389</td><td>10,823,717</td><td>2,646</td><td>150,683</td></tr></table></td><td>〈지침관리팀〉
WHO Dashboard 현행화</td></tr>
</table>

쪽	현행(10-2판)	10-3판 개정(안)	개정사유
118	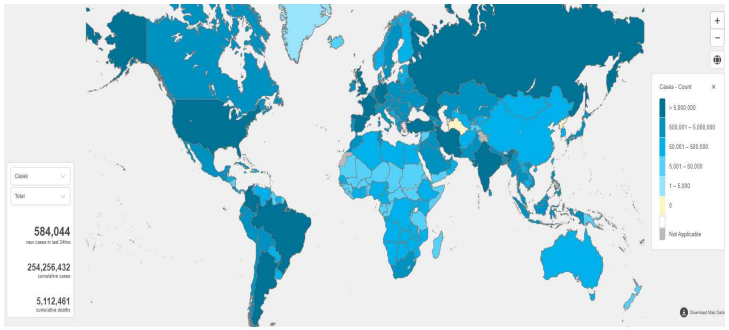 Globally, as of 5:08pm CET, 17 November 2021, there have been 254,256,432 confirmed cases of COVID-19, including 5,112,461 deaths, reported to WHO. As of 14 November 2021, a total of 7,307,892,664 vaccine doses have been administered.	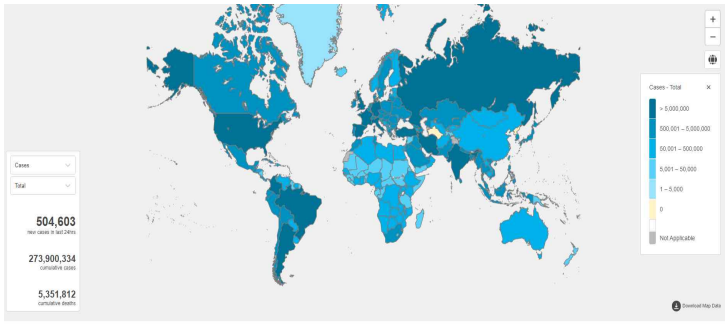 Globally, as of 3:29pm CET, 20 December 2021, there have been 273,900,334 confirmed cases of COVID-19, including 5,351,812 deaths, reported to WHO. As of 19 December 2021, a total of 8,387,658,165 vaccine doses have been administered.	〈지침관리팀〉 WHO GIS 현행화 확진환자 및 예방접종 현황
118	나. 국내 ○ '21.11.18. 총 406,065명 발생, 3,187명 사망	나. --- ○ '21.12.21. 총 576,615명 발생, 4,828명 사망	〈지침관리팀〉 국내 현황 업데이트
120	3. 병원체 및 병원소 다. 변이 ○ 영국, 남아프리카공화국, 브라질, 인도 등에서 여러 돌연변이를 가진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됨 (신설)	3. ---------- 다. --- ○ ---------- - 다국발 변이 바이러스(B.1.1.529) 오미크론형은 2021년 11월에 확인됨	〈지침관리팀〉 오미크론변이 정보 추가
128	7. 치료 ○ 호흡 곤란 시 산소를 공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기계호흡이나 체외막 산소공급 등의 처치를 시행 ○ 산소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서 렘데시비르의 효과가 일부 확인되어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긴급 승인이 되었거나, 긴급 승인을 준비 중임 ○ 중앙임상위원회에서 산소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나 기계환기 중인 환자에게 덱사메타손 치료를 권장 ○ 산소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 중 고위험군(60세 이상, 기저질환자, 폐렴 소견)에 대하여 렉키로나주 투여 가능 ○ 상기 치료 이외에도 대증치료, 합병증에 대한 치료도 중요함 (신설)	7. -- ○ ---------- ○ 산소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항바이러스제(베클루리주) 투여 가능 ○ (삭제) ○ 산소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 중 고위험군(50세 초과, 기저질환자, 폐렴 소견)에 대하여 항체치료제(렉키로나주) 투여 가능 ○ 상기 치료 이외에도 대증치료, 합병증에 대한 치료도 중요함 ○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에서 발간한 「COVID-19 진료권고안(ver 2.0)」과 대한감염학회에서 발간한 「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임상진료지침(2021. 5. 31. 업데이트)」 참고	〈환자관리팀〉 코로나19 치료 정보 현행화

쪽	현행(10-2판)	10-3판 개정(안)	개정사유
	서 식		
139	〈서식 6〉 코로나19 기초역학조사서(확진환자) 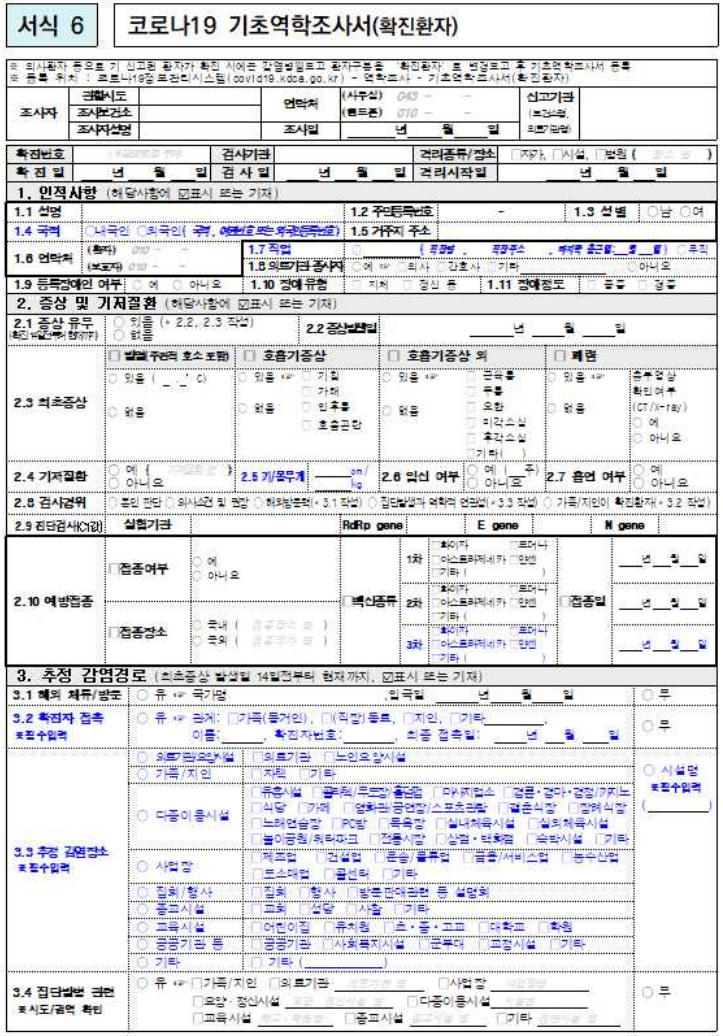	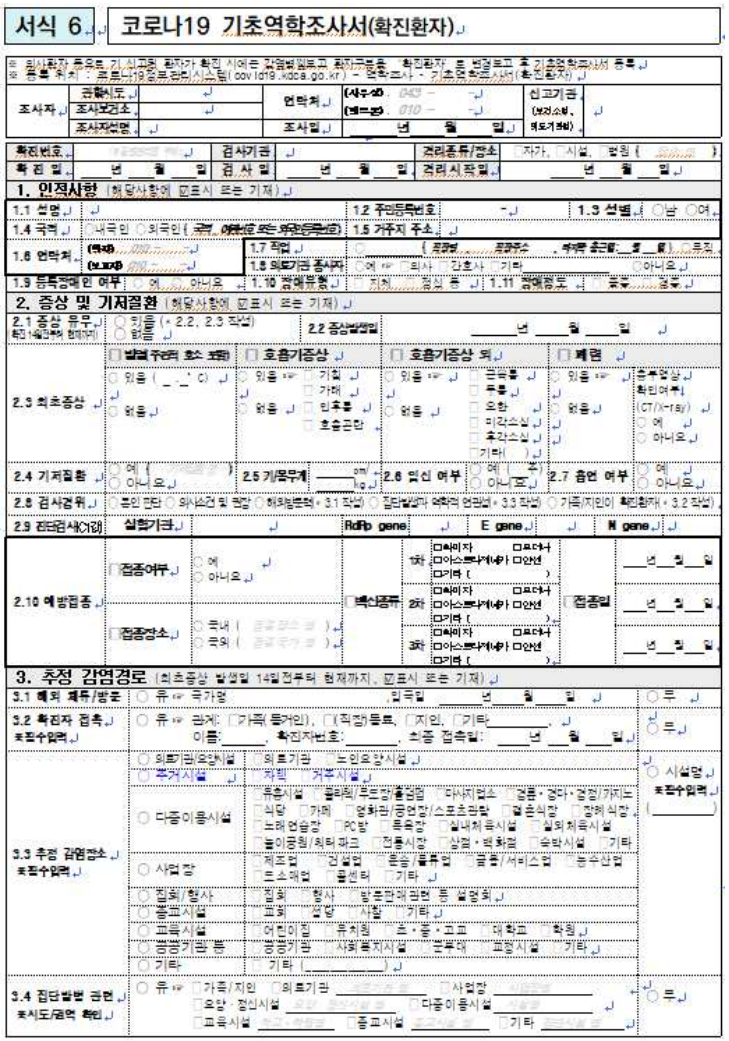	〈중앙사고수습본부〉 지침서식 수정 요청 〈역학조사팀〉 서식 6의 추정감염경로 중 추정 감염장소 일부 수정 가족/지인→주거시설 □기타→□거주시설

쪽	현행(10-2판)	10-3판 개정(안)	개정사유
	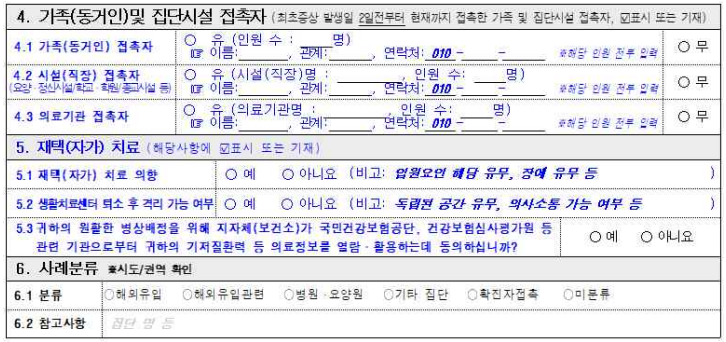 4. 가족(동거인)및 집단시설 접촉자 (최초증상 발생일 2일전부터 현재까지 접촉한 가족 및 집단시설 접촉자, ☑표시 또는 기재) 4.1 가족(동거인) 접촉자 ○ 유 (인원 수 : 명) ☞ 이름:, 관계:, 연락처: 010 - - ※해당 인원 전부 입력 ○ 무 4.2 시설(직장) 접촉자 (요양·정신시설(확진 확원)/종교시설 등) ○ 유 (시설(직장)명 : , 인원 수: 명) ☞ 이름:, 관계:, 연락처: 010 - - ※해당 인원 전부 입력 ○ 무 4.3 의료기관 접촉자 ○ 유 (의료기관명 : , 인원 수: 명) ☞ 이름:, 관계:, 연락처: 010 - - ※해당 인원 전부 입력 ○ 무 5. 재택(자가) 치료 (해당사항에 ☑표시 또는 기재) 5.1 재택(자가) 치료 의향 ○ 예 ○ 아니요 (비고: 업무요인 해당 유무, 장애 유무 등) 5.2 생활치료센터 퇴소 후 격리 가능 여부 ○ 예 ○ 아니요 (비고: 독립된 공간 유무, 의사소통 가능 여부 등) 5.3 귀하의 원활한 병상배정을 위해 지자체(보건소)가 국민건강보험공단,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귀하의 기저질환력 등 의료정보를 열람·활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? ○ 예 ○ 아니요 6. 사례분류 ※시도/권역 확인 6.1 분류 ○해외유입 ○해외유입관련 ○병원·요양원 ○기타 집단 ○확진자접촉 ○미분류 6.2 참고사항 접단 명 등	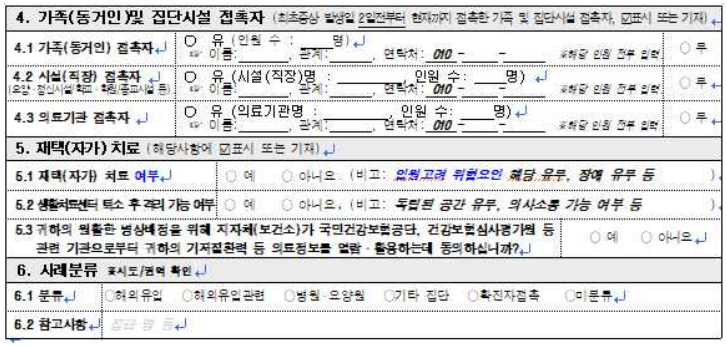 4. 가족(동거인)및 집단시설 접촉자 (최초증상 발생일 2일전부터 현재까지 접촉한 가족 및 집단시설 접촉자, ☑표시 또는 기재) 4.1 가족(동거인) 접촉자 ○ 유 (인원 수 : 명) ☞ 이름:, 관계:, 연락처: 010 - - ※해당 인원 전부 입력 ○ 무 4.2 시설(직장) 접촉자 (요양·정신시설(확진 확원)/종교시설 등) ○ 유 (시설(직장)명 : , 인원 수: 명) ☞ 이름:, 관계:, 연락처: 010 - - ※해당 인원 전부 입력 ○ 무 4.3 의료기관 접촉자 ○ 유 (의료기관명 : , 인원 수: 명) ☞ 이름:, 관계:, 연락처: 010 - - ※해당 인원 전부 입력 ○ 무 5. 재택(자가) 치료 (해당사항에 ☑표시 또는 기재) 5.1 재택(자가) 치료 여부 ○ 예 ○ 아니오 (비고: 업무요인 해당 유무, 장애 유무 등) 5.2 생활치료센터 퇴소 후 격리 가능 여부 ○ 예 ○ 아니오 (비고: 독립된 공간 유무, 의사소통 가능 여부 등) 5.3 귀하의 원활한 병상배정을 위해 지자체(보건소)가 국민건강보험공단,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귀하의 기저질환력 등 의료정보를 열람·활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? ○ 예 ○ 아니오 6. 사례분류 ※시도/권역 확인 6.1 분류 ○해외유입 ○해외유입관련 ○병원·요양원 ○기타 집단 ○확진자접촉 ○미분류 6.2 참고사항 접단 명 등	
부 록			
174	부록 2. 자가격리자 전담부서와 보건부서의 역할 분류 □ 담당사무	-----. ---------- □ -----	〈격리관리팀〉 신속한 격리통지 및 지자체 담당자 업무 간소화

<table>
<tr><th>쪽</th><th>현행(10-2판)</th><th>10-3판 개정(안)</th><th>개정사유</th></tr>
<tr><td></td><td>
<table>
<tr><th>구분</th><th>담당사무</th></tr>
<tr><td>보건
부서</td><td>‣ 시·도별 접촉자관리대책(민간자원, 비상자원, 격리시설 등) 수립
‣ “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” 모니터링 및 격리자 관리 결과 입력
* 격리 종료 시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변동사항 수정
‣ 최초 방문 및 안내 사항 설명 등 자가격리자 관리
- 안내사항 : 자가격리 대상·기간 안내 및 생활수칙 설명, 격리 장소의 무단이탈 등 격리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안심밴드 착용과 이를 거부할 경우 시설격리 조치 설명
‣ 코로나19 임상증상 이외의 증상으로 의료기관 이용시 지원</td></tr>
</table>
</td><td>
<table>
<tr><th>구분</th><th>담당사무</th></tr>
<tr><td>보건
부서</td><td>‣ ----------

‣ ----------
----
* ----------

‣ 자가격리자 수칙, 주의사항 등 안내 및 자가격리자 관리
- ----------

‣ ----------
----------</td></tr>
</table>
</td><td></td></tr>
<tr><td>175</td><td>○ 응급상황* 발생 시(112 또는 119에 신고 시) 출동대원에게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자임을 알려야 합니다.
* 응급상황 예시 : 중증질환 악화, 분만, 사고·재해 등

○ 가족 또는 함께 거주하는 분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도록 합니다.</td><td>○ ----------(----------)----------
----
* ----------
〈신설〉
○ 지진,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일반적인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에 따릅니다.
- 건물 외부로 대피가 필요한 재난상황인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부로 대피합니다.
- 대피과정 및 대피장소에서는 가급적 다른 사람과 거리를 유지하고 식사 등은 따로 합니다.
- 통신 등이 가능한 상황인 경우 자가격리 담당 공무원에게 대피상황, 이동장소 등을 알리고 연락을 유지합니다.
○ ----------</td><td>〈격리관리팀〉
재난 발생 시 생활수칙 추가</td></tr>
</table>

쪽	현행(10-2판)	10-3판 개정(안)	개정사유
177	○ 응급상황* 발생 시(112 또는 119에 신고 시) 출동대원에게 가족 및 동거인 중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자가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. * 응급상황 예시 : 중증질환 악화, 분만, 사고·재해 등 ○ 자가격리자 방에서 배출된 쓰레기는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」(부록 13)을 참조합니다.	○ ---------- ---------- ---- * ---------- 〈신설〉 ○ 지진,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에 따릅니다. - 자가격리자의 상태를 확인하고, 필요한 경우 접촉을 최소화하며 자가격리자의 대피를 돕습니다. ○ ---------- ----------	〈격리관리팀〉 재난 발생 시 생활수칙 추가
185	〈부록 6〉 병상배정 원칙 및 환자 선별 질문지	〈-----〉 환자 초기 분류를 위한 선별 질문지 (삭제)	〈중앙사고수습본부〉 부록 6 명칭 변경 병상배정 원칙 부분을 본문 이동함에 따라 삭제

<table>
<tr><th>쪽</th><th>현행(10-2판)</th><th>10-3판 개정(안)</th><th>개정사유</th></tr>
<tr><td></td><td>
□ 병상배정 원칙
○ 중증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병상 배정하며, 생활치료센터 신규설치 시, 병원 입원 중인 경증환자는 전원 조치를 원칙으로 함
- (무증상·경증) 생활치료센터
- (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증·중등증) 감염병 전담병원
- (중증이상) 중환자 치료가능 병상▸에 배정
▶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, 중증환자 긴급치료병상,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(중환자용) 등
▶ 재택치료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방대본의 별도 지침에 따름
○ 배정권한은 시도 환자관리반 또는 권역별 공동대응상황실에 있음
<table>
<tr><th>단계</th><th>정의</th><th>현행 중증도 분류</th><th>종전 중증도 분류</th></tr>
<tr><td>1</td><td>일상생활 지장 없음(no limit of activity)</td><td rowspan="2">경증이하</td><td rowspan="2">경증이하</td></tr>
<tr><td>2</td><td>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으나 산소치료 불필요
(limit of activity but No O2)</td></tr>
<tr><td>3</td><td>비관산소치료(O2 with nasal prong)</td><td rowspan="2">중등증</td><td rowspan="2">중증</td></tr>
<tr><td>4</td><td>산소마스크(O2 with facial mask)</td></tr>
<tr><td>5</td><td>비침습인공호흡기/고유량산소요법
(non-invasive ventilation/high flow O2)</td><td rowspan="3">위중증</td><td rowspan="3">위중</td></tr>
<tr><td>6</td><td>침습인공호흡기(invasive ventilation)</td></tr>
<tr><td>7</td><td>다기관손상/에크모/CRRT
(multi-organ failure/ECMO/CRRT)</td></tr>
<tr><td>8</td><td>사망(death)</td><td>사망</td><td>사망</td></tr>
</table>
▶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입실기준 (대한중환자의학회)
○ 인공호흡기 이상의 치료가 필요①하거나 필요할 것으로 예상②되는 자, 기타 중환자실로 신속히 이송할 필요가 있는 자③
① 인공호흡기 에크모 CRRT 등의 치료를 요하는 환자 등
② (예) 고유량 산소요법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환자로서 곧 인공호흡기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자
③ (예) 폐렴이 확인되었고, 산소 요구량이 비관 분당 5L 이상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으로 이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
○ 환자 상태, 환자 주치의의 의학적 판단, 병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
</td><td></td><td></td></tr>
<tr><td>185</td><td>□ 입원/생활치료센터/재택치료 선별을 위한 추가 질문지</td><td>(삭제)</td><td>〈중앙사고수습본부〉
부록 6 질문지 항목 일부 수정
백신접종 및 연령, 고도비만 여부 삭제
본인 희망에 따른 재택치료 가능 여부 추가, 재택치료 제외 대상자 안내,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참여 의향 세부 설명 수정 등</td></tr>
</table>

<table>
<tr><th>쪽</th><th>현행(10-2판)</th><th>10-3판 개정(안)</th><th>개정사유</th></tr>
<tr><td></td><td>
<table>
<tr><td>작성일</td><td></td><td>확진일</td><td></td><td>증상발현일</td><td></td></tr>
<tr><td>성명</td><td></td><td>나이</td><td></td><td>성별</td><td></td></tr>
<tr><td>지역</td><td></td><td>주민번호</td><td></td><td>분류번호</td><td></td></tr>
</table>
<table>
<tr><th>항목</th><th>세부사항</th><th>예</th><th>아니요</th></tr>
<tr><td>백신접종</td><td>백신접종 완료</td><td></td><td></td></tr>
<tr><td>연령</td><td>70세 이상</td><td></td><td></td></tr>
<tr><td rowspan="3">현재 증상</td><td>코로나19 증상 발생 이후 나타난 의식장애
※ 의식이 명료하지 않은 상태</td><td></td><td></td></tr>
<tr><td>호흡곤란
※ 임상병합 중에도 숨이 참 또는 이에 준하는 증상호소(빠른 호흡, 가슴답답함, 만 12세 이하의 경우 청색증, 흉곽함몰, 코벌렁이(flaring) 등)</td><td></td><td></td></tr>
<tr><td>해열제로 조절되지 않는 38도 이상의 발열</td><td></td><td></td></tr>
<tr><td rowspan="10">동반 질환 · 환자 상태</td><td>약물 사용에도 조절되지 않는 당뇨</td><td></td><td></td></tr>
<tr><td>투석을 받아야 하는 환자</td><td></td><td></td></tr>
<tr><td>진단 후 약물 등으로 치료 중인 만성폐질환, 천식, 심부전, 관상동맥질환</td><td></td><td></td></tr>
<tr><td>항암치료 혹은 면역억제제 투여 중인 환자</td><td></td><td></td></tr>
<tr><td>약물로 조절되지 않는 증상을 동반한 정신질환자</td><td></td><td></td></tr>
<tr><td>와상환자
※ 낮시간의 50% 이상을 누워 지내는 자</td><td></td><td></td></tr>
<tr><td>고도비만 여부 (키: cm, 몸무게: kg)
※ BMI 〉 30</td><td></td><td></td></tr>
<tr><td>증상(복통, 진통, 질출혈 등)을 동반한 임신부</td><td></td><td></td></tr>
<tr><td>소아 중증 및 고위험군
※ 호흡곤란, 청색증, 흉곽함몰, 투명한 음식섭취(수유)불량 및 탈수, 진단된 만성폐질환/심장질환/대사성질환/면역이상, 면역억제제 투여, 호흡기능이나 분비물 배출에 장애가 있거나 흡인 위험이 높은 경우(미숙아, 인지장애, 척수손상, 경련질환 및 기타 신경근육 질환, 유전학적 이상 등)</td><td></td><td></td></tr>
<tr><td rowspan="3">재택치료 가능 대상자</td><td>임원요인에 해당하지 않으면서(보호자 포함), 무증상·경증인 경우 재택치료 의향 있음 또는 동의함</td><td></td><td></td></tr>
<tr><td>소아, 70세 이상(예방접종완료자) 또는 장애가 있는 등 돌봄이 필요한 확진자의 경우, 확진자의 건강상태 확인이 가능하고, 임원요인이 없는 보호자가 있음</td><td></td><td></td></tr>
<tr><td>고시원·쉐어하우스·노숙 등 격리가 어려워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에 해당하지 않음</td><td></td><td></td></tr>
<tr><td></td><td>건강·격리관리를 위한 의사소통이 가능함</td><td></td><td></td></tr>
<tr><td>임상시험 참여 의향</td><td>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참여의향 여부
※ 다만, 임상시험 참여는 희망하는 경우 거주지 외의 의료기관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병상이 배정될 수 있음</td><td></td><td></td></tr>
<tr><td>비고(특이사항)</td><td>※ 그 외 확인한 추가 사항에 대해 역학조사관 또는 병상 배정반에서 작성</td><td></td><td></td></tr>
</table>
</td><td>
<table>
<tr><td rowspan="3">조사지</td><td>관할시도</td><td></td><td rowspan="3">연락처</td><td rowspan="3">(사무실)
(핸드폰)</td><td rowspan="3">보건소 이송 담당자</td><td>성명</td><td></td></tr>
<tr><td>조사보건소</td><td></td><td></td></tr>
<tr><td>조사자성명</td><td></td><td>조사일</td><td>____년 ___월 ___일</td><td>연락처</td><td>(사무실)
(핸드폰)</td></tr>
</table>
<table>
<tr><td>작성일</td><td></td><td>확진일</td><td></td><td>증상발현일</td><td></td></tr>
<tr><td>성명</td><td></td><td>나이</td><td></td><td>성별</td><td></td></tr>
<tr><td>지역</td><td></td><td>주민번호</td><td></td><td>분류번호</td><td></td></tr>
</table>
<table>
<tr><th>항목</th><th>세부사항</th><th>예</th><th>아니요</th></tr>
<tr><td rowspan="3">현재 증상</td><td>고로나19 증상 발생 이후 나타난 의식장애
※ 의식이 명료하지 않은 상태</td><td></td><td></td></tr>
<tr><td>호흡곤란
※ 임상병합 중에도 숨이 참 또는 이에 준하는 증상호소(빠른 호흡, 가슴답답함, 만 12세 이하의 경우 청색증, 흉곽함몰, 코벌렁이(flaring) 등)</td><td></td><td></td></tr>
<tr><td>해열제로 조절되지 않는 38도 이상의 발열이 3일 이상 지속</td><td></td><td></td></tr>
<tr><td rowspan="10">위험 요인</td><td>약물 사용에도 조절되지 않는 당뇨</td><td></td><td></td></tr>
<tr><td>투석을 받아야 하는 환자(단,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재택치료 가능)</td><td></td><td></td></tr>
<tr><td>진단 후 약물 등으로 치료 중인 만성폐질환, 천식, 심부전, 관상동맥질환</td><td></td><td></td></tr>
<tr><td>항암치료 혹은 면역억제제 투여 중인 환자(단,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재택치료 가능)</td><td></td><td></td></tr>
<tr><td>약물로 조절되지 않는 증상을 동반한 정신질환자</td><td></td><td></td></tr>
<tr><td>와상환자(낮시간의 50% 이상을 누워 지내는 자)
(단,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재택치료 가능)</td><td></td><td></td></tr>
<tr><td>증상(복통, 진통, 질출혈 등)을 동반한 임신부</td><td></td><td></td></tr>
<tr><td>소아 중증 및 고위험군
※ 호흡곤란, 청색증, 흉곽함몰, 투명한 음식섭취(수유)불량 및 탈수, 진단된 만성폐질환/심장질환/대사성질환/면역이상, 면역억제제 투여, 호흡기능이나 분비물 배출에 장애가 있거나 흡인 위험이 높은 경우(미숙아, 인지장애, 척수손상, 경련질환 및 기타 신경근육 질환, 유전학적 이상 등)</td><td></td><td></td></tr>
<tr><td rowspan="3">재택치료 제외 대상자</td><td>감염에 취약한 주거 환경(고시원, 쉐어하우스, 노숙인 등)에 있는 자</td><td></td><td></td></tr>
<tr><td>소아 · 장애 · 70세 이상 등의 경우로서 돌봄이 필요하나 보호자와 공동격리가 불가능한 자</td><td></td><td></td></tr>
<tr><td>이외에 지자체장이 예외적으로 재택치료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</td><td></td><td></td></tr>
<tr><td>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참여 의향</td><td>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자로, 임상실시 의료기관 및 생활치료센터에 배정될 수 있음</td><td></td><td></td></tr>
<tr><td>비고(특이사항)</td><td>※ 그 외 확인한 추가 사항에 대해 역학조사관 또는 병상 배정반에서 작성</td><td></td><td></td></tr>
</table>
</td><td></td></tr>
<tr><td>185</td><td>○ 항목정의서
70세 이상 : 나이가 70세 이상</td><td>○ --------
(삭제)</td><td></td></tr>
<tr><td>185</td><td>고도비만 : BMI 〉 30
※ 체질량지수(body mass index) : 체중(kg)을 신장(m)의 제곱으로 나눈값</td><td>(삭제)</td><td></td></tr>
<tr><td>194</td><td>〈부록 8〉 코로나19 관련 개인보호구의 사용</td><td></td><td>〈지침관리팀〉</td></tr>
</table>

<table>
<tr><th>쪽</th><th>현행(10-2판)</th><th>10-3판 개정(안)</th><th>개정사유</th></tr>
<tr><td></td><td>○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 상황별 개인보호구 권장 범위
<table>
<tr><th rowspan="3">구분</th><th rowspan="3">상황, 행위</th><th colspan="6">개인보호구</th></tr>
<tr><th colspan="3">호흡기 보호</th><th colspan="2">전신 보호</th><th>눈 보호</th></tr>
<tr><th>수술용 마스크</th><th>KF94 동급의 호흡기 보호구</th><th>전동식 호흡기 보호구</th><th>일회용 장갑[1]</th><th>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</th><th>전신보호복 (덧신포함)</th><th>고글 (또는 안면보호구)</th></tr>
<tr><td rowspan="2">검역</td><td>검역(검역조사)</td><td></td><td>●</td><td></td><td>●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
<tr><td>검역(역학조사)</td><td></td><td>●</td><td></td><td>●</td><td>● (선택 사용 가능)</td><td></td><td>●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선별 진료소</td><td>선별진료소 접수, 안내</td><td></td><td>●</td><td></td><td>●</td><td>●</td><td></td><td></td></tr>
<tr><td>선별진료소 진료, 간호</td><td></td><td>●</td><td></td><td>●</td><td>● (선택 사용 가능)</td><td></td><td>●</td></tr>
<tr><td rowspan="3">이송</td><td>이송(구급차 운전자)[2]</td><td></td><td>●</td><td></td><td>●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
<tr><td>확진/의심 환자 이송(검역관, 보건소직원, 응급구조사 등)</td><td></td><td>●</td><td></td><td>●</td><td>● (선택 사용 가능)</td><td></td><td>●</td></tr>
<tr><td>의심환자 동승 보호자</td><td>●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
<tr><td rowspan="5">진료</td><td>확진/의심환자 병실출입, 진료, 간호 등</td><td></td><td>●</td><td></td><td>●</td><td>● (선택 사용 가능)</td><td></td><td>●</td></tr>
<tr><td>에어로졸 생성 처치[3]</td><td></td><td>● (선택 사용 가능)</td><td></td><td>●</td><td>● (선택 사용 가능)</td><td></td><td>●</td></tr>
<tr><td>검사(X-ray 등 영상의학검사)</td><td></td><td>● (선택 사용 가능)</td><td></td><td>●</td><td>● (선택 사용 가능)</td><td></td><td>●</td></tr>
<tr><td>호흡기 검체 채취</td><td></td><td>● (선택 사용 가능)</td><td></td><td>●</td><td>● (선택 사용 가능)</td><td></td><td>●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검체 관리</td><td>검체 취급(실험실, 검사실 등)[4][5]</td><td></td><td>● (선택 사용 가능)</td><td></td><td>●</td><td>● (선택 사용 가능)</td><td></td><td>●</td></tr>
<tr><td>검체 이송(파손없이 포장된 검체)</td><td>●</td><td></td><td></td><td>●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
<tr><td>장례</td><td>사체 이송, 안치</td><td></td><td>●</td><td></td><td>●</td><td>● (선택 사용 가능)</td><td></td><td>●</td></tr>
<tr><td>청소·소독</td><td>청소 · 소독[6]</td><td></td><td>●</td><td></td><td>●</td><td>● (선택 사용 가능)</td><td></td><td>●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폐기물</td><td>의료폐기물 포장, 취급</td><td></td><td>●</td><td></td><td>●</td><td>● (선택 사용 가능)</td><td></td><td>●</td></tr>
<tr><td>의료폐기물 운반</td><td>●</td><td></td><td></td><td>●</td><td>●</td><td></td><td></td></tr>
</table></td><td>○ ----------
<table>
<tr><th rowspan="3">구분</th><th rowspan="3">상황, 행위</th><th colspan="6">개인보호구</th></tr>
<tr><th colspan="3">호흡기 보호</th><th colspan="2">전신 보호</th><th>눈 보호</th></tr>
<tr><th>수술용 마스크</th><th>KF94 동급의 호흡기 보호구</th><th>전동식 호흡기 보호구</th><th>일회용 장갑[1]</th><th>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</th><th>전신보호복 (덧신포함)</th><th>고글 (또는 안면보호구)</th></tr>
<tr><td rowspan="2">검역</td><td>검역(검역조사)</td><td></td><td>●</td><td></td><td>●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
<tr><td>검역(역학조사)</td><td></td><td>●</td><td></td><td>●</td><td>●</td><td></td><td>●</td></tr>
<tr><td>선별 진료소</td><td>선별진료소 접수, 안내</td><td></td><td>●</td><td></td><td>●</td><td>●</td><td></td><td></td></tr>
<tr><td></td><td>선별진료소 진료, 간호</td><td></td><td>●</td><td></td><td>●</td><td>●</td><td></td><td>●</td></tr>
<tr><td rowspan="3">이송</td><td>이송(구급차 운전자)[2]</td><td></td><td>●</td><td></td><td>●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
<tr><td>확진/의심 환자 이송(검역관, 보건소직원, 응급구조사 등)</td><td></td><td>●</td><td></td><td>●</td><td>●</td><td></td><td>●</td></tr>
<tr><td>의심환자 동승 보호자</td><td>●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 colspan="2"></td><td></td></tr>
<tr><td rowspan="4">진료</td><td>확진/의심환자 병실출입, 진료, 간호 등</td><td></td><td>●</td><td></td><td>●</td><td>●</td><td></td><td>●</td></tr>
<tr><td>에어로졸 생성 처치[3]</td><td></td><td colspan="2">● (선택 사용 가능)</td><td>●</td><td colspan="2">● (선택 사용 가능)</td><td>●</td></tr>
<tr><td>검사(X-ray 등 영상의학검사)</td><td></td><td>●</td><td></td><td>●</td><td>●</td><td></td><td>●</td></tr>
<tr><td>호흡기 검체 채취</td><td></td><td>●</td><td></td><td>●</td><td>●</td><td></td><td>●</td></tr>
<tr><td>검체 관리</td><td>검체 취급(실험실, 검사실 등)[4][5]</td><td></td><td>●</td><td></td><td>●</td><td>●</td><td></td><td>●</td></tr>
<tr><td></td><td>검체 이송(파손없이 포장된 검체)</td><td>●</td><td></td><td></td><td>●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장례</td><td>시신 접촉</td><td></td><td>●</td><td></td><td>●</td><td>●</td><td></td><td>●</td></tr>
<tr><td>시신백 이송, 관 운구</td><td>●</td><td></td><td></td><td>●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
<tr><td>청소·소독</td><td>청소 · 소독[6]</td><td></td><td>●</td><td></td><td>●</td><td>●</td><td></td><td>●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폐기물</td><td>의료폐기물 포장, 취급</td><td></td><td>●</td><td></td><td>●</td><td>●</td><td></td><td>●</td></tr>
<tr><td>의료폐기물 운반</td><td>●</td><td></td><td></td><td>●</td><td>●</td><td></td><td></td></tr>
</table></td><td>코로나19 전파경로 및 국제기구 및 주요국 권고 근거, 국내 전문가 의견 및 현장요청 반영
일회용 방수성 긴팔 가운 사용 안내
장례 상황 분류하여 개인보호구 안내</td></tr>
<tr><td>195</td><td>○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 상황별 개인보호구 예시
- 긴팔가운을 포함한 4종(KF94 동급 이상의 호흡기 보호구, 장갑, 방수성 긴팔가운,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) 또는 전신보호복(레벨D) 선택 사용 가능</td><td>○ ----------
- ----------
---------- 사용</td><td>〈지침관리팀〉
코로나19 전파경로 및 국제기구 및 주요국 권고 근거, 국내 전문가 의견 및 현장요청 등 개인보호구 사항 반영</td></tr>
</table>

<table>
<tr><th>쪽</th><th>현행(10-2판)</th><th>10-3판 개정(안)</th><th>개정사유</th></tr>
<tr><td></td><td>▶「코로나19 선별진료소 하절기 운영 수칙 배포」(중앙방역대책본부-4920('20.6.10)) 참고
▶ 우리나라는 감염병 대응을 위해 미국의 방식을 따라 레벨 A~D로 구성하여 적용하고 있으며, 레벨D단계의 보호장비는 최소한의 피부와 호흡기 보호가 필요 시 착용하게 되며, 일회용 보호복(후드타입), 일회용 마스크(N95 또는 KF94 동급 이상의 마스크), 장갑, 고글 등으로 구성</td><td>(삭제)</td><td></td></tr>
<tr><td>230</td><td>부록14. 해외 입국자 관리방안 안내
<table><tr><th>단기체류 외국인</th><th>격리면제자</th></tr><tr><td>◦ 비자 타입이 B1, B2, C1, C3, C4의 경우</td><td>① 비자 타입이 A1(외교), A2(공무), A3(협정)의 경우
* 단, SOFA협정 적용자로 주한미군(A3)과 그 관련자는 미측 자체 격리
② 입국 전 한국대사관(또는 관계부처)에서 다음의 용무로 '격리면제서' 사전 발급을 받은 경우
▲ 중요한 사업상 목적(계약, 투자 등)* ▲ 학술 · 공익적(국제대회,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제한)
▲ 인도적 목적 등(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장례식 참여로 한정) ▲ 공무국외출장 후 귀국하는 공무원 (공무출장명령서와 '격리 면제서' 소지 필수, 출장지에 대사관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출장명령서 소지로 대체)
* 중요한 사업 목적으로 단기간 방문하는 장기체류비자(D7, D8, D9) 소지 외국인 포함(자가격리면제서 소지 필수)
③ 항공기 승무원의 경우
④ 객실승무원 외 탑승정비사, 화물정비사(GD지참) 및 부정기편 운항에 필수적인 현지 지점 파견자(출장품의서, 항공사 ID카드 지참)
⑤ 국내외 예방접종완료자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
▲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완료자인 경우 ▲ 무증상 ▲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적용 제외국가 發 입국자가 아닐 것</td></tr></table></td><td>부록14. 해외 입국자 관리방안 안내
<table><tr><th>단기체류 외국인</th><th>격리면제자</th></tr><tr><td>◦ 비자 타입이 B1, B2, C1, C3, C4의 경우</td><td>① 비자 타입이 A1(외교), A2(공무), A3(협정)의 경우
* 단, SOFA협정 적용자로 주한미군(A3)과 그 관련자는 미측 자체 격리
② 입국 전 한국대사관(또는 관계부처)에서 다음의 용무로 '격리면제서' 사전 발급을 받은 경우
▲ 중요한 사업상 목적(계약, 투자 등)* ▲ 학술 · 공익적(국제대회,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제한)
▲ 인도적 목적 등(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장례식 참여로 한정) ▲ 공무국외출장 후 귀국하는 공무원 (공무출장명령서와 '격리 면제서' 소지 필수, 출장지에 대사관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출장명령서 소지로 대체)
* 중요한 사업 목적으로 단기간 방문하는 장기체류비자(D7, D8, D9) 소지 외국인 포함(자가격리면제서 소지 필수)
③ 항공기 승무원의 경우
④ 객실승무원 외 탑승정비사, 화물정비사(GD지참) 및 부정기편 운항에 필수적인 현지 지점 파견자(출장품의서, 항공사 ID카드 지참)
~~⑤ 국내외 예방접종완료자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~~
~~▲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완료자인 경우 ▲ 무증상 ▲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적용 제외국가 發 입국자가 아닐 것~~</td></tr></table></td><td>〈해외출입국관리팀〉
오미크론 관련 대응 조치 변경
*근거: 코로나19 검역대응 지침(제10-5판), 2021.12.22. 시행</td></tr>
</table>

쪽	현행(10-2판)	10-3판 개정(안)	개정사유
	▲ 입국시 COOV앱 또는 국내 발급 예방접종증명서(확인서)로 증빙 가능한 경우 ⑥ 입국자 중 해수부에서 제공한 격리면제자로 관할 검역소에서 '격리면제서' 발급을 받은 경우 ▲ 접안 전 14일 이상 선박에서만 체류하고, 승하선 및 선원교대 이력 없고, 유증상자 및 환자 발생 등이 없는 선박 내 선원 ▲ 단거리 노선(한-중)을 기항하는 국적 컨테이너 화물 및 카페리 여객선(한중합작 선사 포함)의 내국인 선원 ▲ 국적선사의 국적선(컨테이너선, 벌크선, 탱커선, 자동차운반선)에 승선한 내국인 선원 (방역강화대상국가 및 러시아 기항 또는 14일 이내 경유 선박은 미적용)	~~▲ 입국시 COOV앱 또는 국내 발급 예방접종증명서(확인서)로 증빙 가능한 경우~~ ⑤ 입국자 중 해수부에서 제공한 격리면제자로 관할 검역소에서 '격리면제서' 발급을 받은 경우 ▲ 접안 전 14일 이상 선박에서만 체류하고, 승하선 및 선원교대 이력 없고, 유증상자 및 환자 발생 등이 없는 선박 내 선원~~▲ 단거리 노선(한-중)을 기항하는 국적 컨테이너 화물 및 카페리 여객선(한중합작 선사 포함)의 내국인 선원 ▲ 국적선사의 국적선(컨테이너선, 벌크선, 탱커선, 자동차운반선)에 승선한 내국인 선원~~ (방역강화대상국가 및 러시아 기항 또는 14일 이내 경유 선박은 미적용)	
259	〈부록 22〉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입퇴실 기준 및 전원절차 [중증환자 전담병상 퇴실 기준] (생략) ③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경우 (생략)	[----------] (삭제)	〈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〉 중증환자 전담병상 퇴실 기준 현행화
266	〈부록 26〉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수동감시 안내문 [국내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수동감시 안내문(밀접접촉자용)] ▶ 수동감시 대상 조건 ① 밀접접촉 당시에 이미 예방접종완료자였을 것(예방접종완료 후 2주 경과된 자)	[----------] ▶ ---------- ① ---------- 예방접종완료자일 것	〈역학조사팀〉 예방접종완료자 정의 수정

쪽	현행(10-2판)	10-3판 개정(안)	개정사유
	▶ **예방접종완료자** : 다음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「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」 제22조에 따른 "예방접종증명서"를 소지하고 있거나, 관련 시스템을 통해 예방접종완료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(해외 발급 증명서는 향후 순차적으로 인정할 예정) 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경우▶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경우▶ ▶ 예) 예방접종완료일: 9.1일, 2주째: 9.15일, 지침 적용일: 9.16일 0시부터	▶ ---------- : ---------- ① 2차 접종완료자(얀센의 경우 1차 접종완료자) : 2차 접종 후 14일 경과한 날부터 6개월(180일) 이하인 자 ▶ 180일 경과 후 3차 미접종자는 예방접종완료자에서 제외 ② 3차 접종완료자(얀센의 경우 2차 접종완료자) : 3차 접종을 한 후 14일이 경과한 자	
266	②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을 것 ③ 확진자가 발생한 고위험 집단시설(장기요양기관 등)▶의 입소자, 이용자, 종사자가 아닐 것 (신설)	② ---------- ③ ---------- ▶ 단, 3차 접종완료자는 ③ 조건 적용되지 않음	〈역학조사팀〉 예방접종완료자 정의 수정
267	[국내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수동감시 안내문(해외입국자용)] ▶ 수동감시 대상 조건 ① 밀접접촉 당시에 이미 예방접종완료자였을 것(예방접종완료 후 2주 경과된 자)	[----------] ▶ ---------- ① 밀접접촉 당시에 이미 예방접종완료자일 것	〈역학조사팀〉 예방접종완료자 정의 수정

쪽	현행(10-2판)	10-3판 개정(안)	개정사유
	▶ **예방접종완료자** : 다음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「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」 제22조에 따른 "예방접종증명서"를 소지하고 있거나, 관련 시스템을 통해 예방접종완료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(해외 발급 증명서는 향후 순차적으로 인정할 예정) 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경우▶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경우▶ ▶ 예) 예방접종완료일: 9.1일, 2주째: 9.15일, 지침 적용일: 9.16일 0시부터	▶ ---------- : ---------- ① 2차 접종완료자(얀센의 경우 1차 접종완료자) : 2차 접종 후 14일 경과한 날부터 6개월(180일) 이하인 자 ▶ 180일 경과 후 3차 미접종자는 예방접종완료자에서 제외 ② 3차 접종완료자(얀센의 경우 2차 접종완료자) : 3차 접종을 한 후 14일이 경과한 자	
	Q&A		
302	3. 검사 Q2. 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? ○ **(검체 채취)** 검체는 의사, 간호사, 임상병리사가 지정된 장소(선별진료소 등)에서 채취합니다. 필수 검체는 상기도 검체이며, 하기도 검체는 가래가 있는 환자에서 채취합니다. 검체 채취 시 불편감 ·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. ▶ 간호사와 임상병리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 (신설) 상 기 도 | 비인두 또는 구인두 도말물 채취	3. -- Q2. ---------- ○ **(-----)** ----------. 상기도 검체(지침의 예외 사유가 아닌 경우, 비인두도말 기본)를 채취하며, ----------. --------- ---------. ▶ ---------- 〈검체 종류별 채취 방법〉 ----- | (삭제)	〈진단총괄팀〉 비인두도말물을 우선 채취 검체로 명확히 기술하고, 채취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

쪽	현행(10-2판)	10-3판 개정(안)	개정사유
	검체 – (비인두도말) 콧구멍 깊숙이 면봉을 삽입하여 분비물 채취 – (구인두도말) 면봉으로 목구멍 안쪽 벽의 분비물을 긁어서 채취 하기도 검체 타액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깊이 기침하여 가래 채취 –가래가 없는 경우는 억지로 뱉으면 에어로졸 발생가능성이 있으므로 가래 유도 금지	– (------) ------- -------- ------ 하비갑개 중하부에서 분비물 채취 – (------) 혀를 누르고, 면봉으로 편도 주변 인두후벽에서 분비물을 충분히 흡수하도록 긁어서 채취 (비인두도말물 채취가 어려운 경우에 채취) _____ ---------- ----- – ---------- ----------	
312	6. 격리 및 격리해제 Q5. 유증상 확진환자의 격리해제기준은 어떤가요? ▶ (임상경과 기반) (생략) ▶ (임상경과 기반) : 위중증 단계*에 해당하거나 해당한 적이 있는 경우, · (기간) 증상 발생 후 최소 10일 경과 · (증상) 최소 48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* 위중증 : 고유량 산소요법, 인공호흡기, ECMO, CRRT 치료 적용 ▶ (검사기반) (생략) (신설)	6. ---------- Q5. ---------- ▶ ---------- ▶ ---------- · (기간) ----------, 최대 20일까지 적용(20일 경과 시 격리해제) · (증상) ---------- ---------- * ---------- ▶ ------ Q5-1. 위중증이 아닌 경우 최대 20일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나요? ○ 증상이 장기간 지속되어 전파의 우려가 높은 위중증 환자에서도	〈환자관리팀〉 (유증상 확진환자 중 위중증 환자) 격리해제 시 기간 기준 상한 제시(최대 20일까지) 〈환자관리팀〉 유증상확진환자 중 위중증이 아닌 경증, 중등증 환자의 격리해제 기준 명확화

쪽	현행(10-2판)	10-3판 개정(안)	개정사유
		20일이 경과하면 전파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최대 20일의 격리해제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. ○ 따라서 위중증으로 진행하지 않은 경증, 중등증 환자의 경우에서 20일 이상 격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.	
313	6. 격리 및 격리해제 Q9. 접촉자 격리해제 전 검사(12~13일) 시행 후, 1회 혹은 2회 이상 미결정일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?	6. ---------- Q9. ---------- 검사(9~10일) ---------- ----------	〈지침관리팀/격리관리팀〉 기 시행 중인 사항 반영
326	7. 7일 입소 후 3일 자가격리에 준하는 관리 Q24. 7일 이후 퇴원(또는 퇴소)시 이동수단으로 대중교통 가능한가요? Q25. 기존 퇴소시와 동일한 방식 적용이라고 되어있는데, 기존 방식에 포함되는 퇴소방식이 무엇인지,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한지? ○ 7일 이후 퇴원(또는 퇴소)시 이동수단은 기존의 퇴원(또는 퇴소)과 같은 방식으로 합니다.	7. ---------- Q24. ---------- (삭제) ○ ---------- 아래와 같은 ----------	〈환자관리팀〉 지자체 혼동 사항 삭제 등 7일 이후 퇴원(또는 퇴소)시 이동수단 명확화 이하 Q&A 항목 번호 수정